2021회계연도

예산 · 기금운용계획 개요

일 반 회 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근로복지진흥기금

고용노동부

- 순　　서 -

Ⅰ. ’21년도 예산・기금운용계획 주요 내용 ····· 1

1. 편성 방향 ····· 1

2. 총지출 규모 ····· 2

3. 주요사업 편성내용 ····· 4

Ⅱ. ’21년도 예산・기금운용계획 세부내용 ····· 13

1. 예산 ····· 13

2. 고용보험기금 ····· 34

3.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 49

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 61

5. 임금채권보장기금 ····· 67

6. 근로복지진흥기금 ····· 70

Ⅰ. 2021년도 예산·기금운용계획 주요내용

1. 편성 방향

□ 全국민 **고용안전망 구축**

○ **(1차안전망)** 고용보험 적용범위를 확대, **예술인·특고** 등에게 **고용보험료, 구직급여·출산전후급여** 등 지원

○ **(2차안전망)** 고용안전망에서 벗어나 있는 **저소득층·청년 40만명** 대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본격 시행

* 취업성공패키지(국민취업제도Ⅱ, 19만명) 포함 시 총 59만명 지원

□ **디지털·신기술 인력양성 및 비대면 훈련·근무 확산**

○ **(사람투자 확대)** 빅데이터, AI, 첨단소재 등 **신기술 분야**에서 **미래형 핵심 실무인재 1만7천명** 양성

○ **(비대면 훈련·근무) 원격훈련 플랫폼 고도화** 및 콘텐츠 개발 확대, **재택·원격근무 관련 종합컨설팅** 등 지원

□ **고용유지 및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 **(고용유지) 고용유지지원금 78만명** 수준 지원

○ **(청년)** 성과가 있는 **핵심사업**은 **지속 추진**하면서 **제도개선 병행**

○ **(여성)** 중소기업의 **모성보호제도 활용** 지원 강화 및 **예술인·특고**에 대한 **출산전후급여 지원 신설**

○ **(신중년) 재취업지원서비스 지원제도** 현장 안착 지원

○ **(장애인) 중증장애인 출퇴근비용 지원** 신설, **근로지원인 확대** 등 안정적인 직업생활 유지 지원

○ **(지역)** 지역 주도의 **'고용안정 선제대응패키지' 8개 지역** 지원

□ **안전한 일터 조성 지원**

○ **(사망사고예방)** 추락·화재·폭발 등 주요 사고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고소작업대, 유증기 환기팬 등 사고예방시설 지원 확대

○ **(직장내 성희롱·괴롭힘 예방) 강사 지원, 상담센터 확대** 등 예방활동 강화

2. 총지출 규모

□ 총지출은 **35조 6,487억원**, '20년 본예산 대비 **5조 1,347억원**(16.8%) **증가**

* **의무지출**: ('20) 17조 7,614억원 → ('21) 20조 5,890억원(+2조 8,277억원, 15.9%)

* **재량지출**: ('20) 12조 7,526억원 → ('21) 15조 596억원(+2조 3,070억원, 18.1%)

○ **일반·특별회계**는 **7조 672억원**으로, '20년 대비 **1,876억원**(2.7%) 증가

* **주요 증액:** 국민취업지원제도(+5,515억원), 청년디지털일자리지원(+4,676억원), 내일배움카드(+1,171억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542억원)

○ 기금은 **28조 5,815억원**으로, '20년 대비 **4조 9,471억원**(20.9%) 증가

- **고용보험기금**은 18조 8,443억원으로, 3조 3,456억원 증가(21.6%)
- **산재보험기금**은 8조 990억원으로, 1조 1,929억원 증가(17.3%)

* **주요 증액**: 구직급여(+18,328억원), 고용유지지원금(+13,377억원)
산재보험급여(+6,189억원), 클린사업장조성지원(+3,271억원)

< '21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

(억원, %)

회계·기금별	'20년 예산		'21년 예산 (B)	'20년 대비 (B-A)	
	당초(A)	추경(+)			%
▪ 총지출(a+b)	305,139	94,275	356,487	51,347	16.8
- 예산지출(a)	68,795	29,459	70,672	1,876	2.7
· 일반회계	65,226	29,534	67,133	1,907	2.9
· 특별회계	3,569	△76	3,538	△31	△0.9
- 기금지출(b)	236,344	64,815	285,815	49,471	20.9
· 고용보험	154,986	62,964	188,443	33,456	21.6
· 산재보험	69,061	855	80,990	11,929	17.3
· 장애인	5,975	△39	6,789	814	13.6
· 임금채권	4,868	-	7,304	2,436	50.0
· 근로복지	1,453	1,035	2,288	835	57.5
■ 총계*	444,776	87,948	517,108	72,332	16.3

* 총계 : 기금전출금, 기금여유자금 등 포함

□ **고용노동부 소관 일자리 예산은 24조 1,518억원**으로, ’20년 대비 **23.7%** (+4조 6,294억원) **증가**

○ **직접일자리**는 **1,102억원**으로 ’20년 대비 **555억원**(101.5%) **증가**

* **주요증액:**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542억원) 등

○ **직업훈련**은 **1조 9,712억원**으로 ’20년 대비 **△48억원**(△0.02%) **감소**

* **주요증액:** 내일배움카드 中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1,390억원)
40대 생계비지원(75억원, 신설) 등

○ **고용서비스**는 **1조 6,235억원**으로 ’20년 대비 **5,232억원**(47.6%) **증가**

* **주요증액:** 국민취업지원제도(2,771억원 → 8,286억원, +5,515억원)
취업성공패키지(2,328억원 → 3,272억원, +956억원) 등

○ **고용장려금**은 **7조 9,120억원**으로 ’20년 대비 **1조 8,717억원**(31.0%) **증가**

* **주요증액:** 고용유지지원금(351억원 → 13,728억원, +13,377억원)
청년내일채움공제(12,820억원 → 14,017억원, +1,197억원) 등

○ **실업소득지원**은 **12조 5,031억원**으로 ’20년 대비 **2조 1,896억원**(21.2%) **증가**

* **주요증액:** 구직급여(95,158억원 → 113,486억원, +18,328억원) 등

<고용노동부 ’21년 일자리 사업 예산>

(억원, %)

구 분	’20년 예산 (A)	’21년 예산 (B)	’20년 대비 (B-A)	%
합 계	**195,224**	**241,518**	**46,294**	**23.7**
▪ 직접일자리	547	1,102	555	101.5
▪ 직업훈련	19,760	19,712	△48	△0.2
▪ 고용서비스	11,003	16,235	5,232	47.6
▪ 고용장려금	60,403	79,120	18,717	31.0
▪ 창업지원	348	317	△31	△8.9
▪ 실업소득유지지원	103,162	125,031	21,869	21.2

3. 주요사업 편성내용

1 全국민 고용안전망 구축

□ 저소득층·청년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본격 시행

○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안전망에서 벗어나 있는 **저소득 근로빈곤층 40만명**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 본격 시행 <'21> 8,286억원

* ①**취업지원프로그램**(1:1 밀착상담, 취업활동계획 수립, 일경험 프로그램·직업훈련 연계, 구직활동기술 향상 프로그램 등) + ②**구직촉진수당**(저소득 구직자 대상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 구직촉진수당 수급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취업취약계층** 19만명에게 **취업지원서비스**(現취업성공패키지<국민취업지원제도Ⅱ유형>) **지속 제공**

* <'20> 2,317억원, 14만명 → <'21> 3,667억원, 19만명

○ **(일경험)**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들의 **구직의욕·능력을 고취**할 수 있도록 체험형·인턴형 **일경험 프로그램 지원** <'21> 542억원, 29천명

* ▲체험형(2만3천명): 30일 간 업무체험 ▲인턴형(6천명): 3개월 간 인턴업무 수행

□ 구직자 생계지원 및 취업 시 사회보험료 지원

○ **(구직급여) 수급자 증가 추세** 및 **예술인 지원분**(64억원, 3,710명) 반영

* 이직 전 평균보수의 60%를 120~270일간 지급
<'20> 9.5조원, 137만명 → <'20 추경> 13.1조원, 188만명 → <'21> 11.3조원, 164만명

○ **(사회보험료 지원)** 10인 미만 사업장 **저소득근로자 81만명** 대상으로 고용보험·국민연금 **신규가입** 시 **보험료의 80%** 지원

* <'20> 신규가입자 51만명 → <'20 추경> 56만명 → <'21> 81만명

- **예술인**(3.5만명, 97억원)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43만명, 594억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분도 신규 반영

② 디지털·신기술 인력양성 및 비대면 훈련·근무 확산

□ 디지털·신기술 인력양성 등 사람투자 확대

○ **(K-Digital Training)** 혁신적인 기업·대학·훈련기관을 통해 신기술 분야 **'미래형 핵심 실무인재 18만명**(~'25년, **'21년은 1.7만명, 1,390억원**)' 양성

- 신기술 분야 **인력수급전망** 연구 및 **훈련사업 평가시스템** 구축 등 디지털·신기술 분야 협업예산 추진 지원

○ **(K-Digital Credit)** 구직자 훈련 시 **디지털 융합훈련**을 수강하면 훈련비 **50만원 추가 지원**(300~500만원→350~550만원) <'21> 200억원, 4만명

○ **(인프라 확대)** 지역·산업 내 기업·훈련기관이 **디지털 훈련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도록 공동훈련센터에 **훈련시설·장비 지원**(50억원, 5개소)

- 스마트공장 특화 훈련을 실시하는 **폴리텍 스마트공장 특화캠퍼스**를 확대(4→10개소)하고, **고숙련 일학습병행**(P-TECH) 지원도 확대(35→50개소)

○ **(내일배움카드 등)** 내일배움카드(8,005억원<실업자 27만명, 재직자 19만명>, +202억원), 사업주훈련(2,763억원, △392억원),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1,143억원, △48억원), 일학습병행(3,179억원, △376억원) 등은 **현장수요**를 고려하여 **내실화**

□ 비대면 훈련·근무 지원 확대

○ **(원격훈련) 쌍방향 강의 시스템** 도입 등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 고도화**(+60억원), **이러닝·가상훈련 콘텐츠** 개발 확대(110→320과정) 등 공공훈련 강화

* STEP(Smart Training Education Platform): 온-오프라인 융합 직업훈련 종합플랫폼

- 민간훈련기관 등이 자유롭게 **훈련콘텐츠를 제작·공유**할 수 있도록 폴리텍 내 **콘텐츠 제작 스튜디오**를 구축(2개소)하고, **훈련 교·강사**의 **전문성**을 강화(보수교육 1.3→6만명) 하는 등 민간부문 확산 지원

○ **(유연근무 지원) 재택·원격근무** 관련 인사·노무관리 등 **종합컨설팅** 신설(400개소), 유연근무 **간접노무비** 지원 **확대**(8→11천명)

* <'20> 150억원, 8천명 → <현액> 389억원, 34천명 → <'21> 236억원, 11천명

③ 고용유지 및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 **(고용유지)** 일자리를 지키고자 하는 노사의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은 **78만명** 지원

*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원
<'20 추경> 2조 6,826억원, 160만명 → <'21> 1조 3,728억원, 78만명

□ **(청년)** 청년일자리 핵심 지원사업인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9만명**,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년형 10만명** 신규 지원

* **채용**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 1명 추가 고용 시 年 900만원씩 3년간 지원
<'20> 9,919억원 → <추경> 1조 4,270억원 → <'21> 1조 2,018억원
* **근속**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기업, 정부 3자가 기여하여 2년 간 1,200만원 자산형성
<'20> 1조 2,820억원 → <'21> 1조 4,017억원
* **구직**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국민취업지원제도(**청년특례 10만명**)로 통합

○ **'청년디지털일자리'**는 5만명 지원분 반영(최대 180만원 ×6개월)
<'20 추경> 5,611억원, 6만명 → <'21> 4,676억원, 5만명

* 컨텐츠기획, 빅데이터활용 등 IT 활용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 지원

□ **(여성) 육아휴직** 부여 인센티브* 강화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 인센티브 신설 등 중소기업의 모성보호제도 활용 지원

* 중소기업 사업장 최초 육아휴직 부여 시 육아휴직에 대한 지원금(월 30만원)에 **인센티브(월 10만원)추가 지원** →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을 세 번째 부여한 경우까지 확대

○ **예술인**(215명)**·특수형태근로종사자**(1,709명) **출산전후급여** 지원 신설

* (모성보호육아지원) <'20> 1조 5,432억원 → <'21> 1조 5,915억원

□ **(신중년) 재취업지원서비스 지원제도***('20.5월 시행)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사업주에게 **컨설팅, 프로그램, 담당자 교육** 등 제공(49억원, 450개소)

* 정년퇴직 등의 사유로 이직예정인 근로자에게 진로설계, 취업알선, 재취업·창업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함(1천명 이상 기업은 의무)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1조의3)

○ 신중년 일자리 지원을 위해 사회공헌활동지원금 및 적합직무장려금(신규채용 시 연 480~960만원 지원) 지속 지원

* (사회공헌) <'20> 486억원(공헌형 1.3, 경력형 0.5만명) → <'21> 438억원(공헌형 1.2, 경력형 0.5만명)
* (적합직무) <'20> 276억원(신규 3, 계속 3천명) → <'21> 243억원(신규 3, 계속 2.1천명)

□ **(장애인) 저임금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직업생활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출퇴근비용 지원* 신설**(31억원, 6.3천명)

*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자' 대상 월 5만원(교통비 바우처) 지원

○ **IT 특화 맞춤형 훈련센터** 신설·전환(31억원), **근로지원인** 확대(5→8천명), **장애인근로자 지원센터** 확대(3→6개소) 등 취업지원 강화

* (IT 훈련센터) 기업수요에 맞는 수준별 IT 훈련과정을 운영하는 맞춤센터 신설(1개소)·전환(1개소)
(근로지원인)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신체적 장애요인을 보완할 수 있도록 근로지원인 인건비 지원

□ **(지역) 광역·기초** 자치단체가 **협업**하여 **고용위기에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고용안정 선제대응패키지' 8개 지역**(컨소시엄) 지원

* 고용위기 우려 지역이 주도적으로 '중장기 일자리사업'을 추진하여 고용위기에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최대 5년간, 年 40~140억원 지원)

* <'20> 403억원, 5곳 → <'21> 645억원, 8곳(기존 5곳 430억원, 신규 3곳 202억원, 컨설팅 13억원)

4 안전한 일터 조성 지원

□ 추락·화재·폭발 등 주요 사망사고 예방

○ **(안전투자 혁신사업)** 구조적 안전성이 취약한 **위험기계 교체** 및 **뿌리산업 사업장**의 **위험 공정·시설** 등 **개선** 지원 <'21년 3,271억원>

* 위험기계·기구 4,911대, 위험공정·장비 및 위험시설물 개선 921개소
(50인 미만 중소업체 대상, 소요비용의 50% 내 1억원 한도 지원)

○ **(화재·폭발사고 예방)** 추경으로 반영된 **화재·폭발사고 예방시설** (유증기 환기팬, 가연성 가스감지기 등) 지속 지원

*<'20. 추경> 700억원, 11,000개소 → <'21> 140억원, 2,200개소

○ **(현장 밀착지원)** 소규모 건설현장 등 밀착점검·지원을 위해 **안전보건지킴이**(200→400명) 및 **패트롤카**(27→404대) 대폭 확충

-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사고성 재해 밀착관리** 기간 확대 (추경 4,700개소, 5개월→12개월)

□ 산재급여를 통한 재활 지원

○ **수급자 증가**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적용직종 확대**(279억원, 2,800명) 등 반영

* <'20> 5.9조원, 34만명 → <'21> 6.5조원, 36만명

□ 직장내 성희롱·괴롭힘 예방 강화

○ 직장내 **성희롱 예방 강사 지원** 확대(840→1,000개소)

○ **직장내 괴롭힘 상담센터** 확대(8→10개소) 및 지방관서별 **괴롭힘판단 전문위원회** 운영 지원

⑤ 필수노동자 보호 · 지원

□ **(건강보호 강화) 환경미화원, 택배 · 배달** 등 **필수노동자의 건강관리 강화**를 위한 건강진단 등 **지원사업 신설** <'21> 147억원

* 건강진단(5.9만명, 34억원), 근골격계 질환 예방(4,600개소, 51억원), 과로사 고위험군 관리(1.5만명, 33억원), 근로자건강센터 뇌심혈관·근골격계질환 대응 역량 강화(30억원)

□ **(처우개선) 저소득, 감염위험** 등 복합적인 어려움에 노출된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등 대상 한시적 **생계지원**(9만명, 50만원) <'21> 460억원

⑥ 저소득 노동자 및 격차 완화 지원

□ **체불노동자 생계 지원**

○ **(체당금)** 코로나19 영향 등을 감안하여 **체당금 지원 4만명 확대**

* <'20> 4,335억원, 9.6만명 → <'20 현액> 5,061억원, 11.6만명 → <'21> 6,698억원, 13.5만명

- **소액체당금 대상 확대**(재직자, 40억원) · **지급절차 간소화**(확정판결<약 7개월> → 체불확인서<약 2개월>, 244억원) 등 체당금에 대한 접근성 강화

○ **(체불청산융자)** 체불사업주 융자(3→4.5천명) 및 체불근로자 융자(4천명, 임채법 개정소요) 등 **임금체불에 대한 융자 지원** 강화

□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 '21년 최저임금 인상률(1.5%, 8,590→8,720원)을 고려, 지원단가 하향 조정

* <'19> 2조 8,188억원(13만원) → <'20> 2조 1,647억원(9만원) → <'21> 1조 2,966억원(5만원)

□ **고용형태에 따른 격차 완화**

○ '20년에 대폭 확대(42→172억원)한 **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적극 추진, '고용구조개선 컨설팅' 신설(10억원, 기초진단 250개소, 컨설팅 50개소) 등

⑦ 고용노동서비스 질 제고

□ **(디지털 고용서비스) 고용서비스 통합 포털 '고용24'**를 구축, **고용 관련 민원**을 **한 곳에서 신청 · 처리**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추천**

□ **(직업상담 질 제고) 민간 직업상담사 역량 향상**을 위해 **보수교육**을 실시(5천명)하고, 직업상담사 1급 자격을 과정평가형으로 개편(20억원)

□ **(고객상담센터 편의성 제고)** 고객상담센터 번호를 **대표번호('1350')로 통합, 보이는 ARS 도입** 등 상담센터 이용 국민의 **편의성 제고**

참고 1 **재정 효율화 추진 현황**

□ **재정사업평가 결과, 집행실적** 등을 토대로 **불요불급한 재정지출 구조조정**도 병행 추진

○ **성과미흡** 또는 **집행부진** 사업이거나 **제도개선·사업수요·시급성** 등을 고려, **재정효율화 추진**

< 주요 감액사업 현황 >

(단위: 억원)

사 업 명	'20년 예산 (a)	'21년 예산 (b)	증감액 (b-a)	증감액 %
직업안정기관운영(일반)	407	366	△41	△10.1
해외취업지원	596	526	△69	△11.7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 지원	260	219	△41	△15.8
한국기술대학교운영지원	543	350	△193	△35.6
고용보험 미적용자등 능력개발지원	8	4	△4	△53.4
취약계층취업촉진	124	117	△8	△6.2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11,490	8,103	△3,387	△29.5
일자리안정자금지원	21,647	12,966	△8,682	△40.1
청년구직활동지원금	1,642	335	△1,307	△79.6
신중년사회공헌활동지원	486	438	△48	△9.8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472	249	△223	△47.3
합리적 노사관계지원	200	169	△31	△15.4
사회적기업육성(균특)	1,013	974	△39	△3.8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	1,530	1,480	△50	△3.3
청년구직활동지원금(균특)	19	3	△15	△81.8
고용장려금(융자)	216	92	△124	△57.5
지역고용촉진지원금	81	47	△33	△41.1
세대간상생고용지원	134	13	△120	△90.0
청년내일채움공제(고보)	5,033	4,936	△97	△1.9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	3,155	2,763	△392	△12.4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	1,191	1,143	△48	△4.0
산업현장일학습병행지원	3,555	3,179	△376	△10.6
직장어린이집지원	1,337	1,271	△66	△5.0
장년고용안정지원금	916	536	△380	△41.5
장애인직업능력개발	863	673	△190	△22.1
장애인인식개선지원	54	41	△12	△22.8
산재보험 시설건립	41	23	△18	△44.2

참고 2 주요 신규·완료사업 현황

1. 신규사업

(단위: 억원)

사 업 명	'21년 예산	비 고
합 계	191	-
■ 일반회계	160	-
• 디지털 기반의 고용서비스 인프라 지원(정보화)	7	◦ 통합 고용민원 시스템 구축
•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운영지원	141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운영지원 사업에서 분리·신설 *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시행('20.10.1)
• 고용노동분야 양성평등 정책지원	2	◦ 양성평등 정책과제 발굴 및 심층연구
• 공무직위원회 운영	10	◦ 공무직위원회 운영비 등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31	-
• 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	31	◦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출·퇴근 비용을 지원
■ 근로복지진흥기금	460	
•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460	◦ 방문돌봄종사자 등에게 생계 지원금 지급('21년 한시사업)

2. 완료사업

(단위: 억원)

사 업 명	'20년 예산	비 고
합 계	265	
■ 일반회계	265	
• 호남권직업체험센터설립	81	◦ 설립 완료
• 청년취업아카데미	184	◦ K-Digital Training, 교육부 신규 사업 등과 유사중복으로 종료
■ 근로복지진흥기금	0.02	
• 기타민간상환(중소복지)	0.02	◦ 여성노동자 임대아파트 건축관련 국민주택기금 차입금 상환 완료

참고 3 주요 증액 사업

○ '20년 대비 100억원 이상 또는 30%이상 증액된 사업

(단위: 억원)

세부사업명	회계/기금	'20예산 (A)	'21예산 (B)	증 감 (B-A)	증 감 %
국가고용정보화개발센터 구축	일반	18	48	30	171.6
청년내일채움공제(일반)	일반	7,787	9,081	1,294	16.6
내일배움카드(일반)	일반	974	2,145	1,171	120.2
직업능력개발담당자양성 및 훈련매체개발	일반	534	798	264	49.5
국민취업지원제도(일반)	일반	2,771	8,286	5,515	199.0
취업성공패키지지원(일반)	일반	2,317	3,272	956	41.3
고용상 차별개선지원	일반	10	18	7	70.0
고용노동국제협력및통상협상대응	일반	5	8	3	56.7
고용노동행정 혁신역량강화	일반	11	25	14	126.8
고객상담센터운영	일반	37	65	28	76.7
사회적기업육성(제주)	균특	8	12	4	47.4
취업성공패키지지원(균특)	균특	11	15	4	34.1
국민취업지원제도(균특)	균특	31	80	49	158.2
고용유지지원금	고보	351	13,728	13,377	3,811.1
고용창출장려금	고보	1,512	1,865	353	23.3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고보	9,919	12,018	2,099	21.2
내일배움카드(고보)	고보	7,803	8,005	202	2.6
고용보험적용부과지원	고보	198	283	86	43.3
직업훈련생계비대부(융자)	고보	317	434	117	36.9
구직급여	고보	95,158	113,486	18,328	19.3
조기재취업수당	고보	2,594	3,474	880	33.9
모성보호육아지원	고보	15,432	15,915	483	3.1
산재보험급여	산재	59,046	65,236	6,189	10.5
산재보험 적용부과지원	산재	178	247	68	38.3
클린사업장조성지원	산재	1,002	4,273	3,271	326.4
산재예방시설융자(융자)	산재	1,228	3,228	2,000	162.9
업종별재해예방	산재	547	696	149	27.2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	산재	2	4	2	139.6
산재예방시설건립	산재	61	112	50	82.1
유해작업환경개선	산재	511	616	105	20.5
장애인고용장려금	장애인	2,297	2,522	225	9.8
장애인고용관리지원	장애인	988	1,612	624	63.1
장애인기능경기대회	장애인	40	69	29	74.0
체당금지급	임채	4,335	6,698	2,364	54.5
체불청산 지원 융자(융자)	임채	156	240	84	53.5
생활안정자금(융자)	근복	885	991	105	11.9

참고 4 고용노동부 소관 기금 개관 및 적립금

(2019년 기준)

구 분		고용보험기금	산재보험 및 예방기금	임금채권보장 기금	근로복지 진흥기금	장애인고용촉진 및직업재활기금
설 치 목 적		실직자 생활안정, 고용촉진	업무상재해보상	임금체불노동자 생활안정	노동자 생활안정지원	장애인 고용촉진
설 치 근 거		고용보험법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임금채권 보장법	근로복지기본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최 초 시 행		1995년	1964년	1998년	1994년	1991년
운영 기관	징수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지급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 산업안전보건공단	근로복지공단		
적용사업장		1인 이상 (236만 개소)	268만 개소	좌동	-	부담금: 100인 이상 장려금: 1인 이상
보험가입자 (부담자)		피보험자 (1,386만명) 사업장 (236만 개소)	사업주	좌동	-	의무고용 미달 사업주 (민간 2.9%, 공공 3.2%)
피보험자 (수혜자)		노동자(1,386만명)	노동자 (1,873만명)	좌동	저소득노동자	사업주, 장애인
보 험 료		보수총액 ×보험료율	좌동	좌동	복권 수익금 분배 비율	부담기초액(고시)× 가산율 × 고용미달인원
보험 료율	산출 방법	30/1000 내에서 정함	보험급여 지급률 (3년 보험급여 지출액 / 3년 보수총액) + 추가지출률 + 부가보험료율	2/1,000 내에서 정함	복권수익금× 1.86%	장애인 고용에 따른 추가비용의 평균액을 기초로 최저임금의 60% 이상
	계정별 요율	실업급여계정 1.6%(노사 각 50%)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0.25~0.85%	평균 1.65% (0.75% ~ 22.65%)	0.06%	복권수익금× 1.86%	고용부장관이 고시하는 부담기초액에 고용률별로 가산 <단, 미고용시 최저임금 부담>
'20.사업비		154,986억원	69,061억원	4,868억원	1,453억원	5,975억원
'19.연말적립금		73,532억원	195,089억원	9,588억원	1,192억원	9,108억원
'19.적립금비율		실업급여계정 0.4 고안·직능계정 0.8	2.8	2.1	0.8	1.5
법정적립금비율		실업급여 1.5~2배 고용안정·직능 1~1.5배	1.0	1.0	-	-

Ⅱ. 2021년도 예산·기금운용계획 세부내용

◇ 총지출 35조 6,487억원('20년 대비 +5조 1,347억원, +16.8%)
  ○ 예산은 7조 672억원('20년 대비 1,876억원, +2.7%)
  ○ 기금운용계획은 28조 5,815억원('20년 대비 +4조 9,471억원, +20.9%)

1. 예산

1) 세입 및 세출 총괄

□ 세 입

○ 수입은 863억원으로 '20년과 동일

(단위: 백만원)

내 역 별	'20예산 (A)	'21예산 (B)	증감(B-A)	%
합 계	86,322	86,322	-	-
○ 일 반 회 계	85,961	85,961	-	-
· 기타재산 수입	776	776	-	-
· 과태료 수입	42,998	42,998	-	-
· 위약금 및 가산금	274	274	-	-
· 기타경상이전수입	41,900	41,900	-	-
· 기타 수입	13	13	-	-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361	361	-	-
· 기타경상이전수입	361	361	-	-

□ 세 출

○ 지출은 7조 672억원으로 '20년 대비 1,876억원(2.7%) 증액

(단위: 백만원)

회 계 별	'20예산 (A)	'21예산 (B)	증감(B-A)	%
합 계	6,879,522	7,067,169	187,647	2.7
• 일반회계	6,522,622	6,713,346	190,724	2.9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90,906	92,211	1,305	1.4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265,994	261,612	△4,382	△1.6

2) 주요 사업별 예산

1 노동시장정책 지원

❖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영세 중소기업 부담완화 및 고용유지 지원
❖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의 정책이나 법, 제도 등의 예상되는 고용효과 분석
❖ 지역·산업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지원

○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12,966억원**

-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노동자 인건비 상승분의 일부를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지원

○ **일자리대책지원 및 지역일자리목표공시제: 7억원**

- 고용정책심의회 운영, 자치단체 일자리 목표 공시제 등 주요 일자리 정책 추진 지원

○ **고용영향평가사업: 42억원**

-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이 큰 과제 중심으로 고용영향평가 실시, 재정사업과 예산과의 연계강화를 위해 재정사업 고용영향 평가

○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1,480억원**

- 자치단체가 일자리사업을 설계·제안하고, 고용부가 공모로 선정·지원
- 아울러, 고용위기가 우려되는 지역이 주도적으로 '중장기 일자리 사업'을 계획·추진, 자치단체가 고용위기를 선제적으로 대응 할 수 있도록 지원(645억원)

< '21년도 예산 >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예산 (A)	'21예산 (B)	증 감 (B-A)	%
계	2,322,629	1,449,442	△873,187	△37.6
○ 일자리안정자금지원	2,164,716	1,296,564	△868,152	△40.1
○ 일자리대책지원 및 지역일자리목표공시제	734	692	△42	△5.7
○ 고용영향평가사업	4,157	4,157	-	-
○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153,022	148,029	△4,993	△3.3

2 고용서비스 사업

❖ 일자리 정책의 성과도출을 위한 공공취업지원서비스 강화

❖ 실직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강화

o 국민취업지원제도: 8,286억원

-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취업 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

  * 취업지원프로그램 제공, 구직촉진수당(40만명, 월 50만원, 최대 6개월)

o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 542억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들의 취업의욕과 직업 적응능력을 높이고 구직 활동 등에 필요한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일경험 프로그램 제공

  * 체험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실비수당(1일2.1만원) 지급, 참여기관에 대해서는 담당자 멘토링비(10만원) 지급

  * 인턴형: 참여자에게 참여자수당(월 182만원×3개월,구직촉진수당 부지급), 참여기관에 대해서는 담당자 멘토링비(월 10만원) 지급

o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3,272억원

- 저소득 취업취약계층 및 미취업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상담-훈련-알선」에 이르는 단계적·통합적 취업지원 서비스제공

  * 사업규모: ('20년) 14만명 → ('21년) 19만명(+5만명)

    ↳ ▲저소득·특정취약계층: 7 → 4만명(△3만명), ▲청년·중장년층: 7 → 15만명(+8만명)

o 취약계층취업촉진: 117억원

-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직접 또는 민간위탁으로 지원, 공공과 민간 간의 고용서비스 연계를 통한 취업촉진 도모

o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8,103억원

- 10인 미만 사업 저임금근로자의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계속, 예술인·특고 고용보험료 지원 신설

  * 지원대상: ('20년) 월평균보수 215만원 미만 → ('21년) 220만원 미만

ㅇ 실업크레딧지원: 323억원

- 일정 소득* 이하 구직급여 수혜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

* 재산 6억원, 소득 1,680만원 이하

** 일반회계 25%, 고보기금 25%(고용부), 국민연금기금 25%(복지부), 자부담 25%

ㅇ 고용센터인력지원: 885억원

- 고용센터에서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상담원 등 공무직 근로자 1,845명 및 코로나19로 급증한 고용유지지원금, 실업급여 등을 지원하기 위해 채용한 기간제 직업상담원 600명(6개월)의 인건비 지급

- 공공·민간 고용담당인력의 직무역량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비용 지원

ㅇ 직업안정기관운영: 366억원

- 취업지원, 고용보험 및 고용정책 사업을 수행하는 고용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기본 운영비 지원

< '21년도 예산 >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예산 (A)	'21예산 (B)	증 감 (B-A)	%
계	1,817,734	2,189,473	371,739	20.5
○ 국민취업지원제도	277,128	828,647	551,519	199
○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	-	54,181	54,181	순증
○ 취업성공패키지지원	231,665	327,231	95,566	41.3
○ 취약계층취업촉진	12,425	11,654	△771	△6.2
○ 직업안정기관운영	40,728	36,590	△4,138	△10.2
○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1,149,011	810,347	△338,664	△29.5
○ 실업크레딧(일반)	27,712	32,292	4,580	16.5
○ 고용센터인력지원	79,065	88,531	9,466	12.0

3 고용지원 사업

❖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 구축 등 전산망 고도화를 통한 고용서비스 선진화 지원

❖ 노동시장 현황 및 고용노동현안 이슈의 신속한 파악을 통한 고용정책 수립 지원

○ 일자리정보플랫폼 기반 AI 고용서비스 지원: 112억원

-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 및 직무중심 일자리매칭시스템을 구축, 전 생애에 걸쳐 상황별·고용형태별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

  *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기반 AI고용서비스지원(38억원), ▲고용행정 통합 포털시스템 구축(35억원), ▲데이터사전 구축을 위한 온톨로지센터 운영(21억원),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 구축(13억원), ▲머신러닝 기반의 일자리 매칭시스템 구축(4억원)

○ 한국고용정보원운영지원: 328억원

- 한국고용정보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인건비(433명, 291억원) 및 기관운영비(37억원)를 지원

○ 국가고용정보화개발센터 구축: 48억원

- 국가고용정보화개발센터를 구축, 국가기반시설 및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관리(공사비 39.5억원, 시설부대경비 8.5억원)

  * 국가기반시설 : 고용보험전산망
    정보통신기반시설 : 고용보험전산망, 고용안정전산망, 직업능력개발훈련 정보망

○ 디지털기반의 고용서비스인프라 지원: 6.5억원

- 통합고용민원 시스템인 '고용24'(지원금 관리 및 추천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ISP 반영

○ 고용노동통계조사: 244억원

- 고용노동정책 수립 시행·평가의 기초자료 제공을 위한 각종 통계조사

- 통계 사각지대 해소*, 매월 지역별(권역별) 세부산업 고용통계 생산** 등 **통계조사 강화**

*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대상 확대(상용 5인→ 상용 1인 이상 사업체, 시범조사 4만개 추가, 3.2만→7.2만)

** 사업체노동력조사 지역별(권역별)/산업중분류 통계 생산을 위한 표본 확대(시범조사 1만개 추가, 4만→5만)

○ 고용동향조사분석: 66억원

- 대상별 노동 이동, 변화 등 고용통계 생산, 고용동향 심층 분석 및 인력수급 전망을 통하여 노동시장의 종합적인 정보 제공(46억원)

- 빅데이터 수집 생산 분석을 위한 빅데이터센터 구축(17억원), 초고령사회 대비 고용통계 및 해외사례 분석을 위한 고령자 고용정책연구(3억원)

< '21년도 예산 >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예산 (A)	'21예산 (B)	증 감 (B-A)	%
계	65,342	80,504	15,162	23.2
○ 고용노동통계조사	22,742	24,422	1,680	7.4
○ 한국고용정보원운영지원	31,657	32,819	1,162	3.7
○ 국가고용정보화개발센터	1,766	4,797	3,031	171.6
○ 고용동향조사분석*	(5,046)	6,632	1,586	순증
○ 일자리정보플랫폼 기반 AI 고용서비스 지원	9,177	11,184	2,007	21.9
○ 디지털기반의 고용서비스 인프라지원(정보화)	-	650	650	순증

* '21년부터 「고용보험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이관, ( )는 '20년 고용보험기금 계획액

4 청년고용 사업

❖ 청년의 노동시장 조기 진입과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한편, 산업 수요에 맞는 인력양성과 해외진출 등을 지원

❖ 청년들의 체계적인 취업진로 및 일경험을 확대하고, 자기주도적 구직활동 적극지원

o 청년센터 운영: 43억원

- 청년 친화적인 청년정책 통합 지원체계를 통해 청년일자리사업 등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온·오프라인 청년센터 운영 지원

  * 온라인 ('20년) 30억원 → ('21년) 24억원 (온라인 상담시스템 운영비 등)
  * 오프라인 ('20년) 12개소 19억원→ ('21년) 12개소 19억원 (프로그램 운영비 등)

o 청년일자리창출지원: 4,676억원

- 중소·중견기업에서 **IT 활용 가능한 직무**에 미취업 청년을 채용할 경우 최대 6개월간 인건비 지원

  * 월 최대 180만원(임금수준에 비례) 및 간접노무비 10만원 추가 지원
  * ('20년 추경) 6만명 → ('21년) 5만명

o 청년내일채움공제(일반): 9,081억원

- 중소·중견기업에 신규취업한 청년의 초기 경력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적립**(신규 10만명)

  * (만기공제금) 1,200만원 = 청년 300만원 + 기업 300만원<정부지원>+ 정부 600만원
  * ('20년) 34.2만명(신규 13.2만+지속 21만) → ('21년) 35.2만명(신규 10만+지속 25.2만)

o 한국잡월드운영: 269억원

- 한국잡월드 운영을 위한 출연금(총지출 396억원-자체수입 127억원)

  * (사업비) 콘텐츠 67억원(비대면 10억, 메이커 스페이스 57억), 기타 운영 11억 (마케팅 2억, 전산 9억) 등

o 해외취업지원: 526억원

- 해외 진출 희망 청년을 대상으로 교육훈련 등을 실시, 구인수요에 맞는 인재로 양성하여 해외취업으로 연계

* K-Move 스쿨: ('20년) 3,550명 → ('21년) 3,032명
민간해외취업알선 지원: ('20년) 800명 → ('21년) 690명
해외취업정착지원금: ('20년) 4,400명 → ('21년) 3,960명

ㅇ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 지원: 219억원

- 대학생 등 청년층에 대한 체계적인 진로·취업지원 및 일경험 확대 등 학교-노동시장 간 원활한 연계를 통해 청년의 사회진출 지원

* 대학일자리센터 100개소, 중소기업 탐방 1만명 지원,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 등

ㅇ 직업정보제공 및 직업지도: 38억원

- 직업심리검사, 진로상담 매뉴얼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 개발·보급, 진로지도전문가 양성교육, 청년고용정책 총괄 연구개발 및 모니터링을 위한 허브기능 구축 등을 통해 청년 및 성인의 진로 설계 및 취업지원

* 직업정보제공 12.8억원, 직업지도 25.3억원(청년고용지원 4.4억원 포함)

ㅇ 청년구직활동지원금: 335억원

- 자기주도적 구직활동 청년을 대상으로 월 50만원씩 6개월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

* '21년 신규자 선정은 없으며 '20년 선정자에 대한 계속지원분만 반영

< '21년도 예산 >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예산 (A)	'21예산 (B)	증 감 (B-A)	%
계	1,058,878	1,518,841	459,963	43.4
○ 청년센터 운영	4,912	4,273	△639	△13.0
○ 청년일자리창출지원[1]	(796,338)	467,600	467,600	순증
○ 청년내일채움공제(일반)	778,704	908,102	129,398	16.6
○ 한국잡월드운영	25,449	26,962	1,513	5.9
○ 해외취업지원	59,574	52,625	△6,949	△11.7
○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 지원	26,041	21,931	△4,110	△15.8
○ 직업정보제공및직업지도[2]	(4,234)	3,811	3,811	순증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164,198	33,537	△130,661	△79.6

1) '20년 제3회 추경 신규사업, ( )는 추경 예산
2) '21년부터 「고용보험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이관, ( )는 '20년 고용보험기금 계획액

5 여성·장년 및 사회적기업 사업

❖ 고용보험 미적용자에 대한 출산급여 지원으로 출산 지원의 사각지대 해소 및 성희롱 예방교육 지원 등을 통한 차별 없는 일자리 환경 조성

❖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신중년의 숙련된 경험과 노하우 활용을 통한 신중년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층 대상 사회적기업 창업 지원을 강화하여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 및 일자리 창출

ㅇ 고용평등환경개선지원: 19억원

- 남녀고용평등강조기간 운영,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지원 등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사업 운영 등 지원

ㅇ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249억원(총 지원인원 16,566명)

- 임시·일용·특수고용·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적용 출산여성에게 급여 지원

ㅇ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지원: 438억원(총 지원인원 16,700명)

- 퇴직 이후 신중년이 경력을 활용하여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

  * 기존 신중년 사회공헌 및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지원유지(사회공헌 13,000명 →11,700명 / 경력형 일자리 5,000명)

ㅇ 중장년층취업지원: 223억원

- 40세 이상 중장년 재직자 및 근로자에게 생애설계교육, 전직지원, 취업알선 등의 고용서비스 제공

  * 재취업지원서비스 시행지원 신설(48.7억 원, 컨설팅 450개소)

ㅇ 사회적기업 육성<일반회계>: 222억원

- 브랜드·기술개발 등 R&D, 마케팅 분야 등에 필요한 사업개발비 지원

  * 총 1,200개소 지원

o 사회적기업진흥원운영지원: 599억원

-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해 청년 등 사회적기업가 육성, 성장지원센터 운영, 사회적기업 판로·성장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

  *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운영(10→13개소)

o 사회적기업육성<균특회계>: 974억원

- (예비)사회적기업이 신규채용한 근로자의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 일부 지원

  * 일자리창출 7,775명, 사회보험료 6,382명

o 사회적기업육성(제주)<균특회계>: 12억원

- 제주지역 사회적경제기업의 사업개발비 지원

  * 사업개발비(제주) 20개소, 사업운영비(제주) 63백만원

< '21년도 예산 >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예산 (A)	'21예산 (B)	증 감 (B-A)	%
계	307,398	273,686	△33,712	△11.0
○ 고용평등환경개선지원	2,076	1,929	△147	△7.1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47,208	24,899	△22,309	△47.3
○ 신중년사회공헌활동지원	48,592	43,826	△4,766	△9.8
○ 중장년층 취업지원	25,640	22,252	△3,388	△13.2
○ 사회적기업육성<일반회계>	21,245	22,245	1,000	4.7
○ 사회적기업진흥원운영지원	60,528	59,924	△604	△1.0
○ 사회적기업육성<균특회계>	101,291	97,405	△3,886	△3.8
○ 사회적기업육성(제주)	818	1,206	388	47.4

6 직업능력개발 사업

❖ 신산업·신기술로의 경제구조 변화에 맞추어 K-Digital Training 등 **디지털·신기술 분야 인력양성** 등을 통한 **사람투자** 확대

❖ STEP 고도화 등 비대면·원격 인프라 구축, 국가기술자격 검정지원, 폴리텍·한국기술교육대 운영 등 **직업능력개발체계 구축** 지원

ㅇ 내일배움카드(일반): 2,145억원

- 내일배움카드제를 통해 ① 디지털 신기술 분야 핵심 실무인재 양성(K-Digital Training) 및 ② 일반고 3학년생·고용보험 미가입자 대상 훈련 실시

ㅇ 미래유망분야 고졸인력양성: 8억원

- 특성화고(직업교육, 8개 학과)와 신산업분야 민간훈련기관(직업훈련) 연계를 통한 체계적 교육·훈련 과정 운영지원 ('18~'19년 학과개편 및 시범과정 운영 → '20년 과정 운영)

ㅇ 한국산업인력공단 운영지원: 1,341억원

- 자격검정 사업 등 한국산업인력공단 운영비용 지원

  * 자격검정사업(1,038억원), 외국인고용관리사업(154억원), HRD확산 및 역량강화(54억원), 국제교류협력사업(9억원), 지방세소급분지원(18억원), 경상운영비(1,260억원) 및 자체수입(△1,192억원)

ㅇ 한국산업인력공단(정보화): 65억원

- 한국산업인력공단 전산장비 등 유지보수 지원

ㅇ 한국폴리텍대학 운영지원: 2,203억원

- 학위과정 훈련을 위한 인력개발사업, 시설확충 등 한국폴리텍대학 운영비용 지원

  * 인력개발사업(345억원), 시설확충사업(230억원), 정보전산화사업비(38억원), 지방세소급분지원(89억원), 경상운영비(1,923억원) 및 자체수입(△422억원)

ㅇ 한국폴리텍대학 운영지원(BTL 정부지급금): 268억원

- BTL 사업 정부지급금

  * 21개 캠퍼스 임차료 181억원, 운영비 87억원

o **직업능력개발 담당자 양성 및 훈련매체 개발: 798억원**

- 우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및 실천공학기술자 등 직업능력개발 전문가의 안정적 양성 및 훈련매체 개발

  * 직업훈련교원및HRD담당자양성(210억원), 직업훈련교원재·향상연수(234억원), 평생능력개발온라인훈련사업(354억원)

o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운영지원: 350억원**

- 기관운영비, 교육시설증축 등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운영비용 지원

  * 시설확충 및 개보수사업(97억원), 대학정보화사업(8억원), 연구학생지원비(27억원), 기관운영비(436억원) 및 자체수입(△218억원)

o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운영지원(BTL 정부지급금): 33억원**

- 기숙사 및 공학관에 대한 BTL사업 정부지급금

  * 임차료(23억원) 및 운영비(10억원)

o **고용보험 미적용자 등 능력개발지원: 4억원**

- 고용보험 미적용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에 대한 훈련과정 운영

o **직업능력개발심사평가: 220억원**

- 직업훈련기관 및 훈련과정에 대한 심사평가 실시, 스마트훈련 전환 지원 등 철저한 훈련서비스 품질관리를 통하여 효과성 제고

  * 훈련기관 평가(32억원), 훈련과정 심사(67억원), 훈련과정평가(58억원), 중앙부처 사업평가(20억원), 스마트훈련 전환 지원(33억원), 기타(10억원)

o **직업능력개발인프라구축: 222억원**

- 로봇, 3D 프린터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NCS 개발·보완

- 블라인드 채용 확산, HRD 컨퍼런스·직업방송 운영 등 직업능력 개발 핵심 인프라에 대한 운영 지원

  * NCS 개발(10직무) 및 개선(110직무), 컨설팅 지원(기업 700개소) 등

o **숙련기술장려사업: 243억원**

- 최고의 숙련기술을 갖춘 '대한민국 명장', '우수 숙련기술인'을 선정하고, 기능경기대회 개최 등을 통해 숙련기술 우대풍토 조성

  * 숙련기술전수 등(111억원), 지방·전국기능경기대회 개최, 민간기능경기대회 지원 등(132억원)

< '21년도 예산 >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예산 (A)	'21예산 (B)	증 감 (B-A)	%
계	570,348	790,041	219,693	38.5
○ 내일배움카드(일반)	97,404	214,504	117,100	120.2
○ 미래유망분야 고졸인력양성	840	840	-	-
○ 한국산업인력공단 운영지원	132,567	134,142	1,575	1.2
○ 한국산업인력공단(정보화)	5,172	6,474	1,302	25.2
○ 한국폴리텍대학 운영지원	198,362	220,270	21,908	11.0
○ 한국폴리텍대학 운영지원 (BTL정부지급금)	23,538	26,821	3,283	13.9
○ 직업능력개발 담당자 양성 및 훈련매체개발	53,358	79,783	26,425	49.5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운영지원	54,326	35,010	△19,316	△35.6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운영지원 (BTL정부지급금)	3,995	3,336	△659	△16.5
○ 고용보험 미적용자등 능력개발지원	786	366	△420	△53.4
○ 직업능력개발심사평가*	(17,965)	22,005	22,005	순증
○ 직업능력개발인프라구축*	(27,014)	22,201	22,201	순증
○ 숙련기술장려사업*	(24,381)	24,289	24,289	순증

* '21년부터 「고용보험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이관한 사업, ( )는 '20년 고용보험기금 계획액

7 노사정책 사업

❖ 노사상생과 협력을 바탕으로 노동존중사회 기반 마련

ㅇ 합리적 노사관계 지원: 170억원

-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관련 비영리법인의 노사공동 이익증진과 노사관계 발전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지원

- 노사관계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노사협력 체제 및 체계적 노사갈등 관리 시스템 구축 지원, 산업현장의 상생의 노사관계 인식 제고 및 상생협력 지원 등

ㅇ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운영지원: 141억원

- 노사관계당사자, 고용노동 관련업무 종사자, 일반국민에 대한 고용노동교육을 실시하여 노동인권에 대한 인식을 폭넓게 하고, 고용노동 관련업무 종사자의 전문성과 노사관계 문제해결 능력 제고

ㅇ 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 17억원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 추진하는 고용·인적자원개발 사업, 노사협력 사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지역 노사관계 안정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ㅇ 노사발전재단지원: 212억원

- 노사발전재단이 노사관계 발전을 위하여 수행하는 노사관계 교육, 노동분야 국제교류, 노사파트너십 증진, 차별개선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비와 운영비 등 지원

< '21년도 예산 >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예산 (A)	'21예산 (B)	증 감 (B-A)	%
계	31,376	53,954	22,578	72.0
○ 합리적 노사관계 지원	19,987	16,966	△3,021	△15.1
○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운영지원*	-	14,122	14,122	순증
○ 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	1,860	1,676	△184	△9.9
○ 노사발전재단 지원	9,529	21,190	11,661	122.4

*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시행('20.10.1.)으로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운영지원"사업에서 분리

8 근로조건 보호

❖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해 체불·장시간근로·차별 등 사업장 근로조건 개선을 지원하고 근로감독 역량 강화·인프라 구축 추진

○ **근로조건개선지원: 150억원**

- **(권리구제지원팀운영)** 변호사·노무사 등 전문가와 현장 경험이 많은 민간조정관을 통해 임금체불 등 노동분쟁에 대한 신속한 상담·조정서비스 제공

- **(근로조건자율개선지원)** 근로감독관이 사업장감독을 하는 대신, 공인노무사, 노사단체, 업종별단체 등 노무관리 전문가가 사업장 스스로 법 위반 여부를 점검·개선하도록 지원

- **(장시간근로개선지원)** OECD 최고수준인 우리나라의 장시간근로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동시에 기업·근로자가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공감대 확산 및 인프라 구축 지원

- **(최저임금 준수 지도)** 최저임금 안내, 「청소년 근로조건 알리미」 운영 등을 통한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

- **(서면근로계약 확산·지원)** 서면근로계약서 교부 의무화('12.1.1.) 및 의무 위반시 제재 강화('14년 하반기) 등에 따른 표준근로계약서 제작·배포 등

- **(연소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청소년(연소근로자 등)의 근로조건 보호,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지도점검 등 실시

- **(직장내괴롭힘예방및근절지원)**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19.7.16.)으로 법제화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인식개선 및 상담센터 운영 등

○ **근로감독역량강화: 110억원**

- 노동시장 환경변화를 반영한 근로기준법제 개선 연구, 감독관 직무교육 강화 등을 통해 전문성을 높이고 감독지원 인프라 확충

o **고용상 차별개선지원: 18억원**

- 플랫폼노동 종사자 등 新고용형태 종사자, 기간제·파견 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및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장 지도·점검, 정책연구 등을 통한 법·제도개선

o **퇴직급여제도정착지원: 8억원**

- 퇴직연금제도의 정착 및 확산에 필요한 교육·인식개선·연구센터 위탁운영, 제도개선 등

o **공공부문 고용개선 지원: 15억원**

- 공공부문의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정규직 채용관행 정착 및 정규직 전환 이후 안정적인 노사관계 구축 지원 등

o **공무직위원회 운영: 10억원**

-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된 공무직 또는 기간제의 인사노무관리 및 처우의 기준 정립을 위해 설립된 공무직위원회 운영지원

< '21년도 예산 >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예산 (A)	'21예산 (B)	증 감 (B-A)	%
계	29,257	31,049	1,792	6.1
○ 근로조건개선지원	15,819	15,043	△776	△4.9
○ 근로감독역량강화	9,919	11,033	1,114	11.2
○ 고용상차별개선지원	1,040	1,768	728	70.0
○ 퇴직급여제도 정착지원	759	757	△2	△0.3
○ 공공부문 고용개선 지원	1,720	1,489	△231	△13.4
○ 공무직위원회 운영	-	959	959	순증

⑨ 산업재해예방사업

❖ 진폐근로자에 대한 위로금 지급, 건강진단 등을 통해 광산근로자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

ㅇ 진폐위로금 지급: 893억원

- 진폐근로자와 그 유족의 생활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해 장해 및 유족위로금,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 산재보험법에 의한 장해일시금 또는 유족일시금의 60% 지급['10.11월 이후 신규 진폐판정자 진폐장해등급에 따라 평균임금의 1,040일(1급)~215일(13급)분 지급)]

ㅇ 건강진단: 16억원

- 광산업 종사 및 이직근로자에 대한 1,2차 진폐건강진단 비용 지원

ㅇ 건강진단지원금: 12억원

- 건강진단 부대비용(5.5억원), 기본경비(6.8억원) 등 진폐예방사업 추진 경비

< '21년도 예산 >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예산 (A)	'21예산 (B)	증 감 (B-A)	%
계	90,906	92,211	1,305	1.4
○ 진폐위로금 지급	88,224	89,349	1,125	1.3
○ 건강진단	1,569	1,628	59	3.8
○ 건강진단지원금	1,113	1,234	121	10.9

⑩ 국제협력사업

❖ 고용노동분야 국제협력 사업 등을 통해 국격을 제고하고, FTA 협상 참여 및 주요 FTA 발효에 따른 이행체제 구축

❖ 개도국 고용노동분야 제도구축, 교류협력 등 한국의 발전경험을 제공하여 수원국의 자립성장 및 사회발전에 기여

❖ 내국인 고용기회 보호와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

o ILO 분담금: 의무 분담금 115억원

o 고용노동 국제협력 및 통상협상 대응: 8억원

- 한·OECD 협력지원(0.7억원), 고용노동분야 국제정보 교류(0.6억원), 고용노동 통상협상 대책 추진(3.1억원) 한-EU 및 한-미 FTA 협정 이행 대응(3.2억원)

o 개도국 고용노동분야 개발협력: 73억원

- 개도국 고용노동분야 정책역량 강화(55.8억원), 다자금융기구 및 지역협의체를 통한 고용노동정책 교류(1.1억원), 한·ILO 협력사업(15.8억원)

o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 47억원

- 외국인취업자관리(28.9억원), 외국인력상담센터운영(18.2억원)

< '21년도 예산 >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예산 (A)	'21예산 (B)	증 감 (B-A)	%
계	22,835	24,320	1,485	6.5
○ ILO 분담금(ODA)	9,986	11,567	1,581	15.8
○ 고용노동 국제협력 및 통상협상 대응	487	763	276	56.7
○ 개도국 고용노동분야 개발협력(ODA)	7,089	7,276	187	2.6
○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	5,273	4,714	△559	△10.6

11 고용노동행정지원

❖ 본부, 지방관서 및 위원회 운영과 업무환경개선 등

❖ 제주특별자치도 이관 고용노동부 소관 사업비용 지원

○ 정책연구개발(R&D): 8억원

- 정책대안 개발 등을 위한 정책연구개발사업

○ 고용노동행정역량강화: 25억원

- 행정쇄신·생활공감정책 추진, 조직활성화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정책고객 소통강화 등

○ 고용노동행정(정보화): 227억원

- 정보시스템(노사누리, 전자민원 등) 구축·운영, 전산장비 구매 등

○ 청·관사 유지 및 시설관리: 93억원

- 지방관서 청·관사 보증금 및 임차비용, 청사 유지보수 등

○ 노동위원회 운영: 100억원

- 노동위원회전문성강화(67억원), 청사관리(16억원), 무료법률서비스 지원(10억원), 정보화 운영(7억원)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운영: 34억원

- 회의체 운영비(12억원), 사무처 운영 및 인건비(12억원), 청사관리(10억원)

○ 일자리위원회 운영: 71억원

- 일자리위원회 인건비(9.6억원) 및 운영비(61억원)

○ 고객상담센터 운영: 65억원

- 고객상담센터 운영비 및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55억원), 대표전화 통합(6억원), 보이는 ARS 시스템 도입(4억원) 등

  * '21년부터 민간위탁 콜센터(천안·안양·광주)를 직영 전환하여 운영

○ 제주도 이관업무 지원(균특회계): 150억원

- 직업안정기관운영(10억원), 취업성공패키지지원(15억원), 국민취업 지원제도(80억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3억원), 내일배움카드(1억원), 제주노동위원회지원(13억원), 제주고용센터업무지원(28억원)

< '21년도 예산 >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예산 (A)	'21예산 (B)	증 감 (B-A)	%
계	64,203	77,175	12,972	20.2
○ 정책연구개발(R&D)	776	815	39	5.0
○ 고용노동행정 혁신역량강화	1,094	2,481	1,387	126.8
○ 고용노동행정(정보화)	19,697	22,664	2,967	15.1
○ 노동위원회청사관리	1,844	1,603	△241	△13.1
○ 청관사유지 및 시설관리	9,432	9,325	△17	△0.2
○ 노동위원회전문성강화	5,911	6,666	755	12.8
○ 무료법률서비스지원	900	989	89	9.9
○ 노동위원회정보화운영(정보화)	781	723	△58	△7.4
○ 경제사회노동위원회운영	3,584	3,414	△170	△4.7
○ 일자리위원회운영	5,661	7,054	1,393	24.6
○ 고객상담센터 운영	3,660	6,469	2,809	76.7
○ 자치단체 이관 사업 지원(균특)	10,863	14,972	4,109	37.8

⑫ 정부 내부 거래

❖ 고용보험사업, 산재보험 및 산재예방사업, 임금채권보장사업 등을 위한 기금전출금

ㅇ 고용보험기금으로의 전출금: 8,002억원

- 고용보험사업 관리·운영비용 지원(고용보험운영 등): 2억원
- 모성보호 육아지원 사업 지원(모성보호지원): 2,200억원
- 청년 및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원: 5,800억원

ㅇ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으로의 전출금: 163억원

- 산재보험사업 운영비용 지원: 63억원
- 산재예방사업 소요경비 지원: 100억원

ㅇ 임금채권보장기금으로의 전출금: 0.8억원

< '21년도 예산 >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예산 (A)	'21예산 (B)	증 감 (B-A)	%
계	595,782	816,582	220,800	37.1
○고용보험기금 전출(고용보험운영)	200	200	-	-
○고용보험기금 전출(모성보호지원)	180,000	220,000	40,000	22.2
○고용보험기금 전출(청년 및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원)	400,000	580,000	180,000	45.0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전출(산재보험운영)	6,300	6,300	-	-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전출(산재예방사업)	9,200	10,000	800	8.7
○임금채권보장기금 전출(임채기금운영)	82	82	-	-

2. 고용보험기금

1) 수입 및 지출 총괄

□ 수 입

○ ’21년도 총수입 규모는 **14조 5,497억원**(‘20년 대비 7.6% 증가)

* 정부내부수입, 여유자금회수를 포함한 총 규모는 22조 4,348억원 (`20년 대비 23.6% 증가)

(단위: 억원)

구 분	’20계획(A)	’21계획(B)	증 감 (B-A)	%
총 계	**181,513**	**224,348**	**42,835**	**23.6**
□ 총수입	**135,246**	**145,497**	**10,251**	**7.6**
○ 고용보험료	129,203	139,160	9,957	7.7
○ 재산수입·융자회수 등	6,043	6,337	294	4.9
□ 정부내부수입	5,802	40,002	34,200	589.5
○ 일반회계 전입금	5,802	8,002	2,200	37.9
○ 공자기금 예수금	-	32,000	32,000	순증
□ 여유자금회수	**40,465**	**38,849**	**△1,616**	**△4.0**

□ 지 출

○ ’21년도 총지출 규모는 **18조 8,443억원**(‘20년 대비 21.6% 증가)

* 정부내부지출, 여유자금운용을 포함한 총 규모는 22조 4,348억원 (`20년 대비 23.6% 증가)

○ 7개 사업 2,115억원 일반회계 이관 편성

(단위: 억원)

구 분	’20계획(A)	’21계획(B)	증 감 (B-A)	%
총 계	**181,513**	**224,348**	**42,835**	**23.6**
□ 총지출	**154,986**	**188,443**	**33,456**	**21.6**
○ 고용창출및훈련	36,337	50,468	14,131	38.9
○ 고용안전망확충	98,077	117,336	19,259	19.6
○ 고용평등증진	19,551	19,611	59	0.3
○ 고용노동행정지원	1,022	1,028	7	0.7
□ 정부내부지출 (공자기금 예수이자상환)	**-**	**1,344**	**1,344**	**순증**
□ 여유자금운용	**26,526**	**34,561**	**8,035**	**30.3**

2) 주요 사업별 계획

1 일자리 안전망 강화

❖ 실직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 일자리로의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구직급여 등 지원

❖ 실업자의 노후소득보장 및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구직급여 수급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o 구직급여: 11조 3,486억원

-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근무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자에게 이직 당시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120일~270일간 이직 전 1일 평균임금의 60%* 지급

  * '20년 기준 1일 상한액 66,000원, 하한액 30,060원~60,120원(소정근로시간 비례)

  * 예술인은 이직 당시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간 이직 전 12개월간 평균 보수총액의 60% 지급('20.12월 시행)

o 조기재취업수당: 3,474억원

- 구직급여 수혜자가 본인의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취업한 경우 잔여 소정급여의 1/2 지급

o 자영업자 실업급여: 56억원

-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요건* 충족자에게 본인이 선택한 기준보수의 60%를 120~210일간 지급('19.10.1 이전 이직자는 50%, 90~180일)

  *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1년 이상 보험료 납부 후 고용보험법령에서 규정한 사유로 폐업한 경우 지급

o 실업크레딧지원: 320억원

- 구직급여 수혜자 중 일정 소득* 이하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

  * 재산 6억원, 소득 1,680만원 이하

  ** 일반회계 25% 및 고보기금 25%(고용부), 국민연금기금 25%(복지부), 자부담 25%

< '21년도 기금운용계획 >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계획(A)	'21계획(B)	증 감 (B-A)	%
계	9,807,666	11,733,563	1,925,897	19.6
○ 구직급여	9,515,779	11,348,600	1,832,821	19.3
○ 조기재취업수당	259,416	347,392	87,976	33.9
○ 자영업자 실업급여	5,038	5,558	520	10.3
○ 실업크레딧 지원	27,433	32,013	4,580	16.7

2 고용창출 지원

❖ 취업 취약계층 고용으로 고용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의 일자리창출 지원

❖ 근로시간 단축, 교대제 개편 등을 통한 고용창출을 지원하여 고용의 질 향상 및 노동시장의 고용창출력 제고

ㅇ 고용창출장려금: 1,865억원

- 취업취약계층 고용, 장년 고용, 시간선택제 신규 고용 및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 도입, 국내복귀기업의 고용지원 등을 통해 고용기회 확대한 사업주의 일자리창출 지원

* '16년까지 각 세부(내역)사업으로 운영 → '17년부터 단일 세부사업(고용창출장려금)으로 통합(개편) → '21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분리

< 고용창출장려금 지원인원 및 예산 내역 >

(단위: 백만원, 천명)

구 분	'20년 계획		'21년 계획		비 고
	지원 인원	금액 (추경)	지원 인원	금액	
고용창출장려금	34	151,195	89	186,481	
① 고용촉진장려금	12	49,244	62	94,220	○ 취업 취약자를 채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 지원 * ('20년) 12천명 → ('21년) 62천명 - 특별고용촉진장려금('20년 추경) 계속 지원 및 무기계약 전환 등에 따른 추가지원 수요 반영

구 분	'20년 계획		'21년 계획		비 고
	지원 인원	금액 (추경)	지원 인원	금액	
②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	1	5,255	0.1	538	○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20년 종료, 잔여 사업비) * ('20년) 1,360명 → ('21년) 140명
③ 장년고용지원	6	19,820	5	24,288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 신중년 적합직무 지원인원 변동 * ('20년 추경) 4.2천명→('21년) 5.1천명
④ 일자리함께하기 지원	14	66,063	22	64,625	○ 근로시간단축 등 일자리 증가시 지원 - 300인 미만 주 52시간 단축 수요 신규 반영 * ('20년) 14천명→('21년) 22천명
⑤ 전문인력 및 지역성장산업지원	0.3	1,332	0.4	1,836	○ 국내복귀기업 일자리 증가시 지원 - 국내복귀기업 지정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수요 반영 * ('20년) 200명→('20년) 300명 ○ 전문인력고용, 성장유망업종, 지역특화산업('17년 종료, 잔여 사업비) * ('20년) 70명→('21년) 60명

* 내역별 예산에서 운영비('20년 1,201백만원, '21년 974백만원) 제외(합계에는 포함)

ㅇ 청년추가고용장려금('21년 한시): 1조 2,018억원

- 중소·중견기업(5인 이상)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 채용시 1인당 年 900만원(월 75만원, 최대 3년 간 2,700만원) 지원하여 청년 고용을 촉진

* 중소·중견기업 청년채용 1인당 연 900만원 지원

ㅇ 지역고용촉진지원금: 47억원

- 고용위기 지역에서 사업장 신설·이전·증설을 유도하여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지역고용창출 활성화 지원

ㅇ 고용장려금(융자): 92억원

- 기업이 고령 피보험자의 고용안정 및 취업 촉진, 근로시간단축 등 고용환경 등에 필요한 일부를 융자 지원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

  * ('16)고용환경개선지원융자·일자리설비투자융자 → ('17)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융자 → ('18~)고용장려금융자

  * 일자리함께하기설비투자융자 '21년 사업폐지(잔여사업비 반영)

ㅇ 세대간상생고용지원('18년 종료): 13억원

- 임금피크제 도입, 임금체계 개편 등 세대간 상생 고용 노력과 함께 청년을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 장려금 지원('21년 잔여사업비 반영)

  * 중소·중견기업 청년채용 1인당 연 1,080만원 지원(대기업·공공기관 540만원)

< '21년도 기금운용계획 >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계획(A)	'21계획(B)	증 감 (B-A)	%
계	1,186,098	1,403,529	217,431	18.3
○ 고용창출장려금	151,195	186,481	35,286	23.3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991,900	1,201,802	209,902	21.2
○ 지역고용촉진지원금	8,053	4,746	△3,307	△41.1
○ 고용장려금(융자)	21,570	9,167	△12,403	△57.5
○ 세대간상생고용지원	13,380	1,333	△12,047	△90.0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 '21년 '고용창출장려금' 사업에서 분리 편성

3 고용유지·안정 지원

❖ 고용위기시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지원, 고용친화적 일자리 개편시 일자리의 질 제고 지원 등을 통한 고용유지 및 고용안정 도모

❖ 출산·육아기 여성 근로자의 고용안정 지원, 일·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하여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 제고

ㅇ 고용유지지원금: 1조 3,728억원

- (고용유지지원금) 매출액, 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무급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여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지원

- (노사합의 고용유지지원금)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사업장의 노사가 고용유지에 합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 고용을 유지한 경우 감소한 임금의 일부를 지원('20년 추경 신설, 한시사업)

ㅇ 고용유지자금 융자: 150억원

- 일시적 경영난으로 자금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에 대해 휴업·휴직 수당을 저리(低利)로 대부('20년 추경 신설, 한시사업)

* '20년(추경, 952억원) 이후 고용유지조치계획건수 증가추이를 고려하여 반영 (~'21.6.30.까지 시행)

ㅇ 장년고용안정지원금: 536억

- 임금피크제·근로시간단축* 등 실시로 임금이 감액된 근로자*나 60세이상을 1년이상 고용 또는 정년연장·재고용 등의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통해 정년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하여 고령자 고용안정 도모

* 임금피크제지원(110억, 2,000명),근로시간단축지원(301억, 6,128명)

** 60세이상고령자고용지원(40억,3,300명),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82억,2,274명)

ㅇ 일터혁신지원: 221억원

- 재정여력이 부족한 중소·영세 사업장의 노동조건 향상 및 생산성 제고에 기여하는 맞춤형 **전문컨설팅**과 노사가 상생하는 양질의 **지역일자리 컨설팅** 지원

  * 전문컨설팅 지원 계속: ('20년) 2,200건 → ('21년) 2,480건
    ↳ 전문컨설팅 분야: ①노사파트너십, ②작업조직·작업환경개선, ③고용문화개선, ④임금체계 개선, ⑤평가체계 개선, ⑥장시간근로개선, ⑦평생학습체계 구축, ⑧장년고용안정지원, ⑨비정규직구조개선

  * 노사상생형 지역일자리 컨설팅 지원예산: ('20년) 16억원 → ('21년) 16억원

ㅇ 고용안정장려금: 1,550억원

-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제 도입 또는 육아휴직 등을 부여하여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거나, 고용이 불안정한 기간제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 또는 재고용하여 고용안정을 지원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인원 확대: 7,500명 → 10,000명

  * 정규직전환 집행 실적을 고려하여 지원인원 축소: 6,013명 → 5,050명

  *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인원 확대: 8,200명 → 10,935명

  *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 집행 실적을 고려하여 지원인원 축소: 8,500명 → 6,803명

<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내역 >

(단위: 명, 백만원)

구분	'20년 계획		'21년 계획		비 고
	지원 인원	금액	지원 인원	금액	
고용안정 장려금	**48,622**	**151,192**	**55,656**	**154,979**	
①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7,500	14,355	10,000	18,175	○지원인원 +2,500명, 지원단가 및 지원기간 반영
②정규직 전환 지원	6,013	18,141	5,050	15,331	○ 지원인원 △1,053명
③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12,063	25,054	14,798	35,092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인원 확대: 8,200→10,935천명(+2,735명) ○재택근무 종합컨설팅 400개소 신설 ○노동시간단축 정착지원 3,863명
④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	23,046	93,642	25,808	86,381	○육아휴직 및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인센티브 확대: - 육아휴직 인센티브 확대(2,3호) -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인센티브 1-3호 신설

o 모성보호육아지원: 1조 5,915억원

- 출산 및 육아로 인한 퇴직을 방지하고, 직장과 가정생활이 양립할 수 있도록 출산전후(유·사산) 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급여,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 예술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 출산전후급여 신설(94억원)

o 직장어린이집지원: 1,271억원

- 공공직장어린이집을 운영(근로복지공단 위탁)하거나,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주에게 설치비·인건비·운영비 지원

o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 118억원

-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21년도 기금운용계획 >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계획(A)	'21계획(B)	증 감 (B-A)	%
계	1,990,204	3,167,554	1,177,350	59.2
○ 고용유지지원금	35,089	1,372,832	1,337,743	3,812.4
○ 고용유지자금융자(융자)	-	15,000	15,000	순증
○ 장년고용안정지원금	91,623	53,592	△38,031	△41.5
○ 일터혁신지원	23,590	22,054	△1,536	△6.5
○ 고용안정장려금	151,192	154,979	3,787	2.5
○ 모성보호육아지원	1,543,248	1,591,537	48,289	3.1
○ 직장어린이집지원	133,720	127,092	△6,628	△5.0
○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	11,742	11,800	58	0.5

④ 청년 및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 및 장기근속 유도를 통한 청년 취업지원 및 노동시장 미스매치 해소

❖ 취약계층 대상별 맞춤형 취업지원 및 공공·민간 연계 강화를 통한 고용서비스의 질 향상 도모

ㅇ 청년내일채움공제: 4,936억원

- 중소·중견기업에 신규취업한 청년의 초기 경력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적립**(신규 10만명)

  * (만기공제금) 1,200만원 = 청년 300만원 + 기업 300만원 <정부지원> + 정부 600만원

ㅇ 건설근로자기능향상및취업지원: 106억원

- 기능향상훈련에 참여하는 건설근로자에게 훈련비 및 훈련장려금을 지원하여 기능수준을 향상시키고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ㅇ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지원: 70억원

- 외국인근로자 및 고용사업주의 체류와 근로지원을 위한 고충상담, 한국어·생활법률·정보화 교육 등을 실시하는 기관 운영지원

< '21년도 기금운용계획 >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계획(A)	'21계획(B)	증 감 (B-A)	%
계	526,875	511,286	△15,589	△3.0
○ 청년내일채움공제(고보)	503,268	493,592	△9,676	△1.9
○ 건설근로자기능향상및취업지원	10,649	10,649	-	-
○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지원	8,724	7,045	△1,679	△19.2
○ 직업정보제공 및 직업지도	4,234	-	△4,234	순감

* '직업정보제공 및 직업지도' 사업 '21년 일반회계로 이관 편성

5 직업능력개발 지원

❖ K-Digital Plus, K-Digital Platform 등 **디지털 격차 해소** 및 **디지털·신기술 분야 인력양성** 지원

❖ 중소기업 재직자 훈련, 산업현장의 실무형 인재 양성 등 훈련의 **고용안전망 기능** 강화

ㅇ 사업주 직업훈련지원금: 2,763억원

- 사업주가 소속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 유형에 따라 훈련비 지원

- 노동자의 생산성·문제해결능력 제고에 기여하는 훈련과정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부여

  * 훈련계획인원 : ('20년) 2,292,015명 → ('21년) 2,459,276명

ㅇ 내일배움카드(고보): 8,005억원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신기술 직종, 국가적·전략적으로 인력양성이 필요한 직종의 인력을 집중 양성

  * 훈련계획인원 : ('20년) 79천명 → ('21년) 75천명

- (일반직종훈련) 실업자 및 재직자가 취·창업 등을 위해 직무능력 개발에 필요한 직업훈련과정을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

  * 훈련계획인원 : ('20년) 385천명 → ('21년) 386천명

- (K-Digital Credit) 구직자 등 취약계층이 디지털 역량부족으로 노동시장 진입·적응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디지털 융합훈련 지원 (4만명)

ㅇ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지원: 1,143억원

- 공동훈련센터를 통해 훈련기회가 부족한 중소기업 근로자, 훈련 소외지역 등에 훈련을 제공

- K-Digital Platform(5개소)을 선정하여 디지털 신기술 분야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지역내 중소기업 등과 공동훈련센터 인프라 공유

○ 중견·중소기업 현장훈련지원: 115억원

- HRD 투자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등에 대한 현장교수 지원 및 HRD 우수기업 인증 실시

○ 외국인력고용지원: 23억원

- 외국인근로자 입국초기 취업적응지원, 외국인근로자 교육 및 훈련, 사업주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 교육 등 실시

○ 산업현장일학습병행지원: 3,179억원

- 학습근로자가 체계적 현장훈련을 통해 핵심인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일하며 배우는 훈련 인프라 지원
- 직업교육 중심으로 운영되고 조기취업이 가능한 전문대 재학생 대상 일학습병행 및 도제학교 졸업생 대상 고숙련 기술훈련(P-TECH) 확대 지원

  * ▲(전문대 재학단계) '20. 6개소 → '21. 12개소, ▲(P-TECH) '20. 35개소 → '21. 50개소

○ 기능인력 양성 및 장비 확충: 740억원

- 폴리텍 신기술 학과 확충, 하이테크 과정 확대 등 유망 신기술분야 인력양성을 위한 기반 마련

  * 하이테크과정 : ('20년) 960명 → ('21년) 1,095명

  * 스마트공장 특화캠퍼스 구축 : ('20년) 2개소 → ('21년) 6개소

  * 러닝팩토리형 공동실습장 : ('20년) 9개소 → ('21년) 10개소

- 5060 新 중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도 지속

  * 신중년특화과정 : ('20년) 700명 → ('21년) 900명

○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434억원

- 비정규직 근로자, 실업자, 무급휴직자 등이 생계 걱정 없이 직업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저리로 생계비 대부

  * 대부인원 : ('20년) 6,653명 → ('21년) 9,000명

< '21년도 기금운용계획 >

(단위: 백만원)

구 분	'20계획(A)	'21계획(B)	증 감 (B-A)	%
계	1,787,411	1,640,327	△147,084	△8.2
○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	315,544	276,304	△39,240	△12.4
○ 내일배움카드(고보)	780,316	800,501	20,185	2.6
○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지원	119,114	114,325	△4,789	△4.0
○ 중견중소기업현장훈련지원	10,644	11,523	879	8.3
○ 외국인력고용지원	2,441	2,318	△123	△5.0
○ 산업현장일학습병행지원	355,491	317,921	△37,570	△10.6
○ 기능인력양성및장비확충 (폴리텍)	102,766	73,992	△28,774	△28.0
○ 직업훈련생계비대부	31,735	43,443	11,708	36.9
○ 직업능력개발심사평가	17,965	-	△17,965	순감
○ 직업능력개발인프라구축	27,014	-	△27,014	순감
○ 숙련기술장려사업	24,381	-	△24,381	순감

* '직업능력개발심사평가', '직업능력개발인프라구축', '숙련기술장려' 사업 '21년 일반회계로 이관 편성

⑥ 고용서비스 및 고용정책 기반 구축 지원

❖ 피보험자 등의 고용안정·고용촉진 및 사업주의 인력난 해소 지원을 위한 고용서비스 기관 지원 및 고용보험제도 운영

❖ 일자리·훈련 등 수요자 맞춤형 일자리 정보 제공, 노동시장 정보 분석 등을 통해 고용정책 수립 지원

ㅇ 고용서비스모니터링: 70억원

- 고용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공공·민간에서 제공하는 고용서비스 및 고용보험사업에 대한 평가, 모니터링 등 실시

ㅇ 고용보험 적용·부과지원: 283억원

- 보험료 부과자료 확보, 고용보험 등 제도안내 등을 위한 고객지원센터 운영 및 보험사무대행기관 지원 등

- 고용보험 가입대상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변경(정정)·이직확인 등에 관한 관리업무 수행

ㅇ 고용보험 징수위탁지원: 153억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용보험료의 징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비용 지원

ㅇ 고용보험 적용부과 정보시스템 구축(정보화): 51억원

- 고용보험 적용·부과고지 사업장에 대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수요자 중심의 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o 고용전산망관리(정보화): 334억원

- 고용안정정보망, 고용보험시스템, 직업능력개발정보망 등 일자리, 직업훈련 등의 고용정보 제공을 위한 관련 정보망 운영·관리 비용

- 고용보험법, 직업안정법 등 고용관련 법·제도 변경사항을 정보시스템에 반영

o 고객상담센터지원: 147억원

- 고용서비스의 효율적 제공을 위하여 고용센터 전화민원 일부를 상담하여 신속·정확한 고용노동 서비스 제공

  * '21년부터 민간위탁 콜센터(천안·안양·광주)를 직영 전환하여 운영

< '21년도 기금운용계획 >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계획(A)	'21계획(B)	증 감 (B-A)	%
계	98,237	103,840	5,603	5.7
○ 고용서비스모니터링	6,116	7,041	925	15.1
○ 고용보험 적용·부과지원	19,780	28,337	8,557	43.3
○ 고용보험 징수위탁지원	14,720	15,281	561	3.8
○ 고용보험적용부과 정보시스템구축(정보화)	4,187	5,118	931	22.2
○ 고용전산망관리(정보화)	35,613	33,405	△2,208	△6.2
○ 고객상담센터지원	12,775	14,658	1,883	14.7
○ 고용동향조사분석	5,046	-	△5,046	순감

* '고용동향조사분석' 사업 '21년 일반회계 이관 편성

7 고용보험사업 운영 등

❖ 적용·징수 업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운영 및 피보험자 관리, 고용보험 연구 등 보험사업의 원활한 운영 지원

❖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에 따른 이자 상환

ㅇ 기금운영비(고용보험 적용·징수 및 고용보험사업 운영): 983억원

- 고용보험 적용·징수 위탁에 따른 운영비(711억원)
  * 근로복지공단 인건비(584억원), 근로복지공단 기타경비(117억원) 등
- 고용보험사업 운영비(272억원)
  * 고용보험기금 내 기금운영, 고용안정·창출사업, 모성보호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등 기금사업을 위한 일반운영비

ㅇ 고용보험연구개발: 39억원

- 노동시장연구센터위탁연구(20억원), 고용보험연구용역(13억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조사연구지원(6억원)

ㅇ 자영업자 기금운영비: 6억원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제도 안내(4.4억원), 자영업자 고용보험지원(1.3억원)

ㅇ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상환: 1,344억원

< '21년도 기금운용계획 >

(단위: 백만원)

구 분	'20계획(A)	'21계획(B)	증 감 (B-A)	%
계	102,153	237,248	135,095	132.2
○ 기금운영비(일반)	97,636	98,335	699	0.7
○ 고용보험연구개발	3,946	3,946	-	-
○ 기금운영비(자영업자)	571	567	△4	△0.7
○ 공자기금 예수이자상환	-	134,400	134,400	순증

3.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1) 수입 및 지출 총괄

□ 수 입

○ ’21년도 순수입은 9조 5,624억원(’20년 대비 6.3% 증가)

- 여유자금회수(8조 6,340억원)를 포함한 총 운용규모는 18조 1,964억원

(단위: 백만원)

구 분	’20계획(A)	’21계획(B)	증 감 (B-A)	%
계	16,359,388	18,196,438	1,837,050	11.2
□ 순수입	8,991,701	9,562,412	570,711	6.3
○ 산재보험료	8,208,057	8,669,600	461,543	5.6
○ 이자·융자회수 등	768,144	876,512	108,368	14.1
○ 일반회계 전입금	15,500	16,300	800	5.2
□ 여유자금 회수 등	7,367,687	8,634,026	1,266,339	17.2

□ 지 출

o 여유자금운용을 제외한 ’21년도 기금 총지출은 총 8조 990억원으로 ’20년보다 1조 1,929억원(17.3%) 증가

- 내부거래 및 여유자금운용은 6,221억원(6.6%) 증가

(단위: 백만원)

구 분	’20계획(A)	’21계획(B)	증 감 (B-A)	%
계	16,359,388	18,196,438	1,837,050	11.2
□ 총지출	6,906,103	8,099,027	1,192,924	17.3
○ 산재보험사업	6,099,013	6,724,416	625,403	10.3
○ 산재예방사업	419,756	977,023	557,267	132.8
○ 고용노동행정지원	387,334	397,588	10,254	2.6
□ 여유자금 운용 등	9,453,285	10,097,411	644,126	6.8

2) 주요 사업별 계획

1 산재보험사업

❖ 노동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여 산재노동자 및 그 가족의 생활 안정 등 보호에 기여

❖ 재활서비스 지원강화로 산재노동자 직업·사회복귀 촉진 및 산재병원 인프라 확충 지원

ㅇ 요양급여: 1조 3,481억원

-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 요양하는 경우 치료비 등 지급

  * ('20년) 239,012명 → ('21년) 264,419명

ㅇ 휴업급여: 1조 5,387억원

-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동안 평균임금의 70% 지급

  * ('20년) 144,406명 → ('21년) 168,007명

ㅇ 장해급여: 2조 2,333억원

- 치료종결 후 장해등급 제1급~14급 판정자에게 지급

  * 연금: 329일분(1급)~138일분(7급), 일시금: 1,474일분(1급)~55일분(14급)

  * ('20년) 89,302명→ ('21년) 91,931명

ㅇ 유족급여: 8,429억원

- 업무상 사망자의 유족에게 지급

  * 연금: 급여기초연액(평균임금×365일)의 52~67%, 일시금: 평균임금의 1,300일분

  * ('20년) 31,973명 → ('21년) 33,980명

ㅇ 간병급여: 598억원

- 치료 종결 후 장해등급 1~2급 중 간병급여 대상자에게 지급

  * '20년 상시간병 1일당 41,170원, 수시 간병 1일당 27,450원

  * ('20년) 5,322명 → ('21년) 5,185명

ㅇ 상병보상연금: 1,614억원

- 2년 이상 요양중인 중증요양상태등급 제1급~제3급 해당자에게 휴업급여 대신 평균임금 329일분~257일분 지급
  * ('20년) 3,819명 → ('20년) 3,674명

ㅇ 장의비: 412억원

- 업무상 사망에 대하여 실제 장제를 행한 자에게 평균임금의 120일분 지급
  * '20년 최고 15,867천원, 최저 11,438천원
  * ('20년) 2,807명 → ('21년) 3,139명

ㅇ 직업재활급여: 176억원

- 요양종결 이후 산재보험법상 장해등급 1~12급 판정을 받거나 판정을 받을 것이 의학적으로 명백한 산재근로자의 직장복귀 지원 등을 위해 지급
  * ('20년) 3,382명 → ('21년) 3,941명

ㅇ 진폐급여: 2,806억원

- 요양하거나 진폐장해 판정을 받은 진폐노동자에게 진폐보상연금, 진폐로 사망한 자의 유족에게 진폐유족연금 지급
  * 진폐보상연금은 기초연금(최저임금의 60%)과 진폐장해연금(장해등급에 따라 매월 평균임금의 2일~11일분)을 합한 금액을 지급, 진폐유족연금은 사망전 진폐보상연금 금액을 지급(유족보상연금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20년) 15,672명 → ('20) 16,916명

< '21년도 기금운용계획 >

(단위: 백만원)

구 분	'20계획(A)	'21계획(B)	증 감 (B-A)	%
□ 산재보험급여	5,904,634	6,523,565	618,931	10.5
○ 요양급여	1,216,211	1,348,114	131,903	10.8
○ 휴업급여	1,387,244	1,538,710	151,466	10.9
○ 장해급여	2,027,321	2,233,283	205,962	10.2
○ 유족급여	764,828	842,852	78,024	10.2
○ 간병급여	54,626	59,760	5,134	9.4
○ 상병보상연금	146,469	161,408	14,939	10.2
○ 장 의 비	37,115	41,202	4,087	11.0
○ 직업재활급여	15,468	17,603	2,135	13.8
○ 진폐연금	255,352	280,633	25,281	9.9

<산재근로자 재활 및 의료사업 지원>

ㅇ 산재근로자 재활복지지원: 767억원

- 산재근로자 합병증 등 예방관리(75,819명, 600억원)
- 직업훈련 지원(415명, 14억원), 직장복귀 지원(16억원)
- 사회심리재활 지원(8,087명, 25억원)
- 산재근로자 복지사업 지원(81명, 7억원), 맞춤서비스지원(73억원)
-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1,427명, 32억원)

ㅇ 연구기관 및 케어센터지원: 103억원

- 연구기관지원(2개소, 71억원), 케어센터지원(2개소, 32억원)

ㅇ 산재근로자 요양관리: 97억원

- 의료기관 평가(2.7억원)
- 부정수급방지를 위한 산재보험 부정수급관리(12.3억원)
- 재해조사 전문가 양성 및 인프라 구축(10.7억원)
- 출퇴근 재해 보호지원(71억원)

ㅇ 산재병원 지원: 300억원

- 산재병원지원(재활전문센터 및 산재병원 본부 운영비 지원, 90억원)
- 산재병원시설장비지원(의료장비현대화 29억원, 노후안전시설개보수 140억원)
- 울산산재병원신축지원(공사비 41억원)

< '21년도 기금운용계획 >

(단위: 백만원)

구 분	'20계획(A)	'21계획(B)	증 감 (B-A)	%
계	124,623	126,645	2,022	1.6
○ 산재근로자 재활복지지원	76,920	76,724	△196	△0.3
○ 연구기관및케어센터지원	9,220	10,275	1,055	11.4
○ 요양관리	9,714	9,664	△50	△0.5
○ 산재병원 지원	28,769	29,982	1,213	4.2

<산재보험사업의 위탁운영 지원>

ㅇ 산재보험료 징수관리: 421억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재보험 징수위탁 지원(174억원)
- 산재보험 적용부과지원(247억원)

ㅇ 산재보험시설 건립 및 정보시스템 구축지원: 164억원

- 산재보험시설건립(23억원)
  * 경인지역본부 재건축(3억원),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공사(20억원)
- 산재보험 정보시스템 구축(141억원)

ㅇ 산재보험 위탁 인건비 및 기관운영경비: 2,411억원

- 근로복지공단 직원 인건비(1,906억원)
- 근로복지공단 기관운영경비(346억원)
- 산재보험 적용징수보상 지원(108억원)
- 청사임차보증금 지원(24억원)
- 기금운영관리(27억원)

< '21년도 기금운용계획 >

(단위: 백만원)

구 분	'20계획(A)	'21계획(B)	증 감 (B-A)	%
계	291,082	299,624	8,542	2.9
○ 산재보험료 징수관리	34,613	42,093	7,480	21.6
○ 산재보험시설 건립	4,144	2,313	△1,831	△44.2
○ 산재보험정보시스템 구축	15,344	14,145	△1,199	△7.8
○ 산재보험 위탁 운영경비	236,981	241,073	4,092	2.8

2 산업재해예방 사업

❖ 산재예방 커버리지 확대 및 산재 감소성과 가속화
❖ 기초산업보건 지원 강화 및 직업보건 예방 선진화
❖ 산재예방 생활인프라 확대

ㅇ 클린사업장조성지원: 4,273억원(증 3,271억원)

- (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 기술·재정적 능력이 취약한 산재보험가입 50인 미만 사업장,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 및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유해·위험요인 개선 자금을 지원 : 943억원

※ (제조·서비스) 5,000→2,900개소, △180억원 / (건설업) 6,900개소
(화재·폭발·폭염 등 위험요인 지원) 2,200개소, +140억원

- (안전투자 혁신사업) 중소사업장 등 대상의 안전성 미흡 위험기계 교체, 위험공정·장비 교체·개선 비용지원 : 3,271억원(신규)

※ (위험기계·기구) 4,911대, 2,350억원 / (위험공정·장비) 921개소, 921억원

- 클린사업장조성지원 수행경비: 59억원

※ 사후관리 위탁수수료, 자료제작 , 사업수행여비, 사업성과 평가용역 등 사업수행경비

< '21년도 기금운용계획 >

(단위: 백만원)

구 분	'20계획(A)	'21계획(B)	증 감 (B-A)	%
계	100,192	427,292	327,100	326.5
○ 클린사업장조성지원	100,192	427,292	327,100	326.5

<안전보건기술지원>

ㅇ 업종별재해예방: 696억원(증 148억원)

- 사고성재해 집중관리(공단, 237억원), 사고성재해 집중관리(위탁, 361억원), 화학사고재해 집중관리(36억원), 자율안전관리체계 구축(62억원)

* (증액) 사망사고 핵심 고위험요인 집중관리(93,400→71,640회, 패트롤카 운영 +296대, 증 2억원), 고위험업종 안전보건지킴이(200→400명, 증 61억원),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173→525개소, 증 2억원), 사고성재해 집중관리(위탁)(343천회, 신규 4,700개소, 증 92억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3,550→3,268건, 신규 자산취득 1식, 증 1억원)

* (감액) 빅데이터·인공지능 활용 산재예방(△1억원), 중·소규모 사업장 화재·폭발 사고 기술지도(단가감액 425→250천원, △4억원),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30,500→26,500건, △4억원),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2,610→2,350개소, △2억원)

ㅇ 안전인증및안전검사: 68억원(증 27백만원)

-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인증 50,630건, 제조과정조사 5,400건, 31억원), 방호장치보호구 안전인증(인증 5,601→5,600건, 수거시험 800건, 연구개발 자금지원 1식, 시험장비구매 신규 1식), 산업용기계기구 안전인증(1,050건, 2억원), 위험기계기구 안전검사(45,538→33,700건, △3억원)

* (증액) 방호장치보호구 안전인증(연구개발자금지원 340→557백만원, 신규 자산취득 1식, 증 3억원)

* (감액) 위험기계기구 안전검사(45,538→33,700건, △3억원)

ㅇ 유해작업환경개선: 616억원(증 105억원)

-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483억원), 유해작업환경개선 및 평가(37억원), 소규모 사업장 보건관리 기술지도(63억원), 과로사 고위험군 집중관리(33억원)

* (증액) 직종별 건강진단 및 근골예방 비용지원(신규 59,000명/4,600개소, 순증 84억원), 전자산업 e-SAMS 구축(사업수행방식 변경 9억원), 소규모 사업장 보건관리 기술지도(위탁) (90,000→71,590회, 62,340→88,000원, 증 7억원), 과로사 고위험군 집중관리(신규 15,000명, 순증 33억원)

* (감액) 화학물질에 의한 중독성질환예방(예산 통폐합 및 사업방식 변경, 순감 23억원), 화학물질 노출정보 알리미(△3억원), 석면해체제거작업 안전성평가(2,000→1,835개소, △27백만원)

○ 근로자건강보호: 365억원(증 30억원)

- 근로자건강센터(센터 23개소, 분소 21개소, 207억원), 산업보건이슈 감시 및 대응(11,000→16,000회, 34억원), 직업병 역학조사 및 민간기관 정도관리(28억원), 화학물질 유해위험성 평가(29억원), MSDS 제출 및 비공개 정보 심사(26억원), 옥외근로자 마스크 지원(38억원), 감정노동자 보호사업(4억원)

* (증액) 근로자건강센터(트라우마 기능 확대, 과로사 고위험군 및 근골격계 유증상자 관리지원 강화 등 증 33억원), 산업보건 이슈 감시 및 대응(화학물질에 의한 중독성 질환 예방사업 예산·물량 통합, 증 12억원)

* (감액) MSDS 제출 및 비공개 정보심사(전산 완료소요 등 △5억원), 옥외근로자 마스크 지원(25→20개/인, △10억원)

○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 4억원(증 2억원)

-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 산업재해 조사표 점검(370개소, 2억원)

※ 원하청 산재 통합관리 적용 대상 업종(제조업 및 철도·도시철도운송업, 발전업, 송전 및 배전업, 전기판매업제조업) 중 원청의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장 약 370개소

-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공공기관 안전관리 활동 수준을 평가하여 정부 경영평가에 반영(신규 152개소, 2억원)

< '21년도 기금운용계획 >

(단위: 백만원)

구 분	'20계획(A)	'21계획(B)	증 감 (B-A)	%
계	146,286	174,862	28,576	19.5
○ 업종별재해예방	54,745	69,571	14,826	27.1
○ 안전인증및안전검사	6,736	6,763	27	0.4
○ 유해작업환경개선	51,095	61,592	10,497	20.5
○ 근로자건강보호	33,541	36,531	2,990	8.9
○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	169	405	236	139.6

<안전보건기반조성>

ㅇ 안전보건문화정착: 287억원(△19억원)

- 안전보건교육 및 미디어개발(159억원), 전문교육과정운영(53,220명, 1식, 41억원), 안전보건문화선진화(61억원), 민간재해예방활동지원(26억원)

  * (증액) 취약계층 기초안전보건교육(수수료 증액 3→4만원, 증 13억원)

  * (감액) 안전보건교육(500→425천명, △11억원),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평가(예산이관, △2억원), 전문교육과정운영(실습교육장 완료소요 등 △10억원), 안전보건문화 선진화(△10%, △7억원), 민간재해예방활동지원(△10%, △3억원)

ㅇ 산재예방시설 건립: 112억원(증 50억원)

- 여수 안전체험교육장 건립(3차년도 44억원, 증 15억원)

- 노후 안전체험교육장 시설 개선(1→2개소, 증 46억원)

  ※ 호남 안전체험교육장(2차년도 55억원, 증 38억원) / 중부 안전체험교육장(순증 8억원)

- 익산 IOT 산업안전체험교육장 건립(2차년도 6억원, △4억원)

- 종합 안전보건체험교육장 건립 지원(순감 6억원)

ㅇ 안전보건관리정보시스템 운영: 59억원(△5억원)

- 안전보건관리정보시스템 운영(59억원)

  * (감액) 통합정보시스템 개선 완료소요 등(△5억원)

< '21년도 기금운용계획 >

(단위: 백만원)

구 분	'20계획(A)	'21계획(B)	증 감 (B-A)	%
계	43,088	45,705	2,617	6.1
○ 안전보건문화정착	30,557	28,672	△1,885	△6.2
○ 산재예방시설건립	6,134	11,173	5,039	82.1
○ 안전보건관리정보시스템운영	6,397	5,860	△537	△8.4

<안전보건연구개발>

ㅇ 안전보건연구개발 및 국제협력: 64억원(△10억원)

- 안전보건연구사업(46→48과제, 43억원), 국제협력사업(9억원), 산업재해 통계(10회, 1식, 12억원)

  * (증액) 직업건강연구(10→12과제, 증 2억원), 산업안전분야 학술지발간(신규 1식, 증 3억원)

  * (감액) 제6차 근로환경조사 완료소요(1회, △20억원)

< '21년도 기금운용계획 >

(단위: 백만원)

구 분	'20계획(A)	'21계획(B)	증 감 (B-A)	%
계	7,432	6,406	△1,026	△13.8
○ 안전보건연구개발 및 국제협력	7,432	6,406	△1,026	△13.8

<산재예방위탁운영 지원>

ㅇ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운영비: 1,499억원(증 79억원)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건비 : 1,343억원(증 52억원)

  * (증원 인건비) '20년 정기(20명, 510백만원), '20년 수시(36명 1,837백만원), '21년 정기(60명, 1,699백만원)

  * (공통처우개선분) 1,182백만원(0.9%)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기관운영경비 : 143억원(증 14억원)

  * 청사 전월세 전환 관련 감액분 원복(491백만원), 선택적복지비(48백만원), 업무직 최저임금 상승반영분(19백만원), 노후청사 유지보수비 완료소요(△336백만원), 공통절감(△389백만원)

  * (과목개편) 유해화학물질체계적관리 통합·운영(1,567백만원)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청사임차(13억원)

  * 전월세전환에 따른 일시 절감분 원복(937백만원), '21년 신설청사 보증금(315백만원)

ㅇ 유해화학물질체계적관리: 순감(△1,567백만원)

-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평가연구 및 정보제공

  * 과목개편에 따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기관운영경비'와 통합하여 관리

< '21년도 기금운용계획 >

(단위: 백만원)

구 분	'20계획(A)	'21계획(B)	증 감 (B-A)	%
계	143,606	149,859	6,253	4.4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운영비	141,978	149,859	7,881	5.6
○ 유해화학물질체계적관리	1,628	-	△1,628	△100.0

3 산재보험 및 산재예방 융자

❖ 산재근로자에 대한 대부사업으로 근로자의 생활보장 도모

❖ 유해위험설비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시설개선자금 지원

ㅇ 생활안정자금 융자: 156억원

- 산재근로자와 가족에게 학자금, 혼례비, 장례비, 요양비 등 대부

  * 생활안정자금 : 가구당 2,000만원 한도, 연리 1.25%, 지원대상 1,677명

  * 물량: ('20년) 1,668명 → ('21년) 1,677명

ㅇ 산재근로자 창업점포 지원: 1억원

- 산재근로자 중 창업희망자에게 점포임대 지원('19년 신규지원중단)

  * 1인당 1.5억원 한도, 최장 6년간 연리 2%

  * 물량: 신규지원대상 0명 (기존 지원자의 이전계약 및 임대료 상향지원)

ㅇ 산재예방시설융자: 3,228억원

- 사업장에 대한 유해위험설비·기계기구 및 작업환경 개선비용 융자 지원

  * (증액) 산재예방시설 융자지원 확대(696→1,830개소, 증 2,000억원, 증 214.1%)

  ※ 사업장당 10억원 한도,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연리 1.5%

< '21년도 기금운용계획 >

(단위: 백만원)

구 분	'20계획(A)	'21계획(B)	증 감 (B-A)	%
계	136,321	338,413	202,092	148.2
○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창업점포지원 통합편성)	13,563	15,655	2,092	15.4
○ 산재예방시설융자	122,758	322,758	200,000	162.9

4 산재보험및예방사업 운영비

❖ 기금관리비 및 산재보험·산재예방제도 운영 지원

❖ 산재보험 및 예방제도 관련 연구용역

o 인건비: 20억원

- 기금관리보조요원 및 산업안전정책 전문위원 인건비 등

o 기타경비: 40억원

- 산재보험기금운용, 산재보험 및 산재예방 기본운영경비 등

o 산재보험 및 예방 연구개발: 6억원

- 산재보험 및 산재예방관련 연구용역비 등

< '21년도 기금운용계획 >

(단위: 백만원)

구 분	'20계획(A)	'21계획(B)	증 감 (B-A)	%
계	6,747	6,656	△91	△1.3
○ 기금관리비 인건비	123	125	2	1.6
○ 산재보험운영 인건비	149	152	3	2.0
○ 산재예방운영 인건비	1,699	1,733	34	2.0
○ 기금관리비 기타경비	588	386	△202	△34.4
○ 산재보험운영 기타경비	679	760	81	11.9
○ 산재예방운영 기타경비	2,909	2,900	△9	△0.3
○ 산재보험및예방연구개발	600	600	0	0.0

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1) 수입 및 지출 총괄

□ 수 입

○ ’21년도 순수입은 **8,403억원**(’20년도 대비 11.7% 증가)

- 여유자금회수 등을 포함한 총 운용규모는 1조 6,772억원

(단위: 백만원)

구 분	’20계획(A)	’21계획(B)	증 감 (B-A)	%
계	1,251,138	1,677,204	426,066	34.1
□ 순수입	752,337	840,324	87,987	11.7
○ 자체수입	743,172	830,605	87,433	11.8
- 법정부담금	718,596	807,045	88,449	12.3
- 기타재산수입	14,598	13,555	△1,043	△7.1
- 기타경상이전수입 등	9,978	10,005	27	0.3
○ 공자기금예탁이자수입	9,165	9,719	554	6.0
□ 여유자금 회수 등	498,801	836,880	338,079	67.8

□ 지 출

○ ’21년도 총지출은 **6,789억원**(’20년도 대비 13.6% 증가)

○ 여유자금 운용 규모는 6,983억원

(단위: 백만원)

구 분	’20계획(A)	’21계획(B)	증감 (B-A)	%
계	1,251,138	1,677,204	426,066	34.1
□ 총지출	597,497	678,934	81,437	13.6
○ 경상사업비	525,181	603,901	78,720	15.0
- 장애인고용장려금	229,655	252,191	22,536	9.8
- 장애인고용 및 취업지원	143,394	213,934	70,540	49.2
- 장애인고용인프라지원 등	152,132	137,776	△14,356	△9.4
○ 기금운영비	72,316	75,033	2,717	3.8
□ 정부내부지출	150,000	300,000	150,000	100.0
□ 여유자금운용	503,641	698,270	194,629	38.6

2) 주요 사업별 계획

①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 지원

❖ 장애인 고용사업주에 대한 장려금 지급,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근로지원인·보조공학기기 지원 등 장애인 고용창출 및 유지 지원

○ 장애인고용장려금(연인원 566천명): 2,522억원

- 의무고용률 3.1%(민간기관) ∽ 3.4%(공공기관)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월 30~80만원 장려금 지급

  * 장애인고용장려금: ('20년) 557천명, 2,297억원 → ('21년) 566천명, 2,522억원

○ 장애인고용관리지원: 1,612억원

- 근로지원인 지원확대(▲지원인원: 5,000 → 8,000명, ▲지원단가 확대: 시간당 12,820 → 13,044원)를 통해 중증장애인에게 고용지원 강화

  * 근로지원인: ('20년) 5,000명, 94,809백만원 → ('21년) 8,000명, 155,185백만원

- 중증장애인의 직장적응력 제고를 위해 작업지도원 등을 선임·배치하는 경우 월 14만원을 사업주에게 지원<'21년 850백만원>

- 장애인 고용 편의시설, 통근용승합차 등 지원 확대
  ↳ 사업주당 3억원(장애인 1인당 1천만원, 중증 1천5백만원) 한도로 지원

  * ('20년) 120개소, 2,300백만원 → ('21년) 190개소, 3,450백만원

- 장애인 근로자 고충상담 및 조정 역할 수행하는 장애인 근로지원센터(장애인근로자의 애로·고충문제 중재 및 조정자 역할 수행) 확대

  * ('20년) 3개소 878백만원 → ('21년) 6개소 1,707백만원

○ 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6,300명): 31억원(신규)

- 저임금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근로의욕 고취 및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출·퇴근 비용 지원(신규 시범사업)

  *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자 중 중위소득 100% 미만자에 대해 월 5만원 범위 내에서 교통비(실비)를 바우처로 지급

○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90개소): 285억원

-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 등 (중증)장애인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확대

↳ 시설·장비 투자비의 75% 지원(1명 고용창출 시 3,000만원, 20억원 한도)

* ('21년) 일반·자회사형 70(+10), 사회적 경제기업형 15(+5), 컨소시엄형 5개소

○ 보조공학기기지원(12천점): 144억원

- 장애로 인한 기능 저하 또는 상실로 직업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에 대해 작업용 보조공학기기를 지원

↳ 고용유지조건으로 장애인 1인당 1,000만원(중증 1,500만원)까지 지원

* ('20년) 1.1만점 12,585백만원 → ('21년) 1.2만점 14,437백만원

○ 장애인고용증진융자: 90억원

- 장애인근로자의 통근용 승합차 구입비용, 고용 및 유지를 위한 생산라인 조정 비용 융자

* 1인당 1억원, 사업주당 15억원(3년거치 5년상환, 이율 1%)

< '21년도 기금운용계획 >

(단위: 백만원)

구 분	'20계획(A)	'21계획(B)	증 감 (B-A)	%
계	378,011	468,382	90,371	23.9
○ 장애인고용장려금	229,655	252,191	22,536	9.8
○ 장애인고용관리지원	98,837	161,192	62,355	63.1
○ 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	-	3,065	3,065	순증
○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27,434	28,472	1,038	3.8
○ 보조공학기기지원	12,585	14,437	1,852	14.7
○ 장애인고용증진융자	9,500	9,025	△475	△5.0

② 맞춤형 장애인 취업지원

❖ 장애인의 개별 특성과 능력을 고려한 양질의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장애인 고용촉진

ㅇ 장애인취업지원: 262억원

- 중증장애인에 대해 현장훈련과 고용 후 적응지도하는 지원고용*, 중증장애인 인턴제(400명)** 지원 <'21년 14,787백만원>

  * (현장훈련) 3~7주, 최대 6개월 연장 가능, (적응지도) 6개월, 6개월 한도 연장 가능

  ** (인턴채용지원금) 월 80만원, 6개월, (정규직 전환지원금) 월 65만원, 6개월

- 장애학생에 대한 체계적 진로상담과 직업체험 기회 제공하는 '장애학생 취업지원'(5천명) <'21년 2,588백만원>

- 직업적 장애판정 및 현장평가 등 직업능력평가, 고용의무이행지도, 장애인취업알선지원 <('20년) 5,350백만원 → ('21년) 8,791백만원>

ㅇ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지원: 170억원

- 기존 서비스 제공 Ⅰ유형(직업능력향상형, 8천명)과 저소득층을 위한 Ⅱ유형*(취업집중형, 1→2천명)을 구분하여 취업성공패키지 서비스를 제공

  * (Ⅱ유형) 생계유지 등 시급한 취업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직접 지원하여 구직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취업 지원 컨설팅 제공

ㅇ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29억원

- 발달장애인 등 취업의욕 고취에 동료 장애인의 지원이 효과적인 것을 고려하여 장애인이 직접 참여하는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

  * 동료지원가 500명이 비경제활동 중증장애인 1만명에 대해 취업지원

ㅇ 최저임금적용제외 장애인근로자 전환지원: 34억원

-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상 장애인에게 직업재활과 훈련기회를 제공하여 일반노동시장으로 전환지원

  * (지원대상) 800명, (고용전환촉진수당) 월 30만원, (취업성공수당) 100만원

< '21년도 기금운용계획 >

(단위: 백만원)

구 분	'20계획(A)	'21계획(B)	증 감 (B-A)	%
계	44,557	49,470	4,913	11.0
○ 장애인취업지원	22,725	26,166	3,441	15.1
○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지원	14,921	16,985	2,064	13.8
○ 중증장애인 지역맞춤취업지원	2,951	2,914	△37	△1.3
○ 최저임금적용제외 장애인근로자 전환지원	3,960	3,405	△555	△14.0

3 장애인 직업능력 제고 및 인식개선 지원 등

❖ 장애인 직업능력개발원 운영, 공공·민간훈련 지원 등을 통해 노동시장 수요에 적합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연구·인식개선 사업

ㅇ 장애인직업능력개발: 673억원

- 공단 장애인직업능력개발원(5개소) 양성훈련 등 훈련과정 지원
- 경기남부직업능력개발원(가칭) 신축(총사업비 1,135억원)
  * 토지보상비 완료 등 감액(△33,866백만원), 건축비 30% 반영(14,824백만원)
- 발달장애인을 위한 전용훈련센터 운영(19개소, 19,249백만원)
- 기업의 훈련수요에 대응한 맞춤훈련센터 운영(7→8개소, 10,545백만원)
  * IT특화 맞춤훈련센터 신설(1개소) 및 전환(1개소) 증 3,151백만원
- 장애인 민간위탁훈련(935명, 6,462백만원) 및 공공훈련(80명, 257백만원) 지원

ㅇ 장애인기능경기대회: 69억원

- 장애인 기능경기(지방·전국, 발달) 개최 지원
- 국제대회 참가* 및 입상자에 따른 기능장려금 지급
  * '21년 러시아(모스크바) 개최 예정

ㅇ 장애인고용연구: 44억원

- 장애인고용연구(29→32과제),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570백만원) 및 장애인고용패널조사(583백만원),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465백만원), 발달장애인의 삶과 일자리 실태조사(300백만원) 등

ㅇ 장애인인식개선지원: 41억원

-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한 장애인 고용 인식개선 교육이 의무화됨('18.5월)에 따라 사업주에 대한 교육지원 및 장애인 일자리 창출

* 교육강사 양성 (일반)1,000명, (보수)500명, 강사료 지원 12,000개소

< '21년도 기금운용계획 >

(단위: 백만원)

구 분	'20계획(A)	'21계획(B)	증 감 (B-A)	%
계	99,200	82,691	△16,509	△16.6
○ 장애인직업능력개발	86,289	67,254	△19,035	△22.1
○ 장애인기능경기대회	3,970	6,907	2,937	74.0
○ 장애인고용연구	3,569	4,385	816	22.9
○ 장애인인식개선지원	5,372	4,145	△1,227	△22.8

4 장애인고용정보화 지원 및 기금관리 운용 지원

ㅇ 장애인고용정보화 지원: 34억원

- 장애인고용전산망 및 전산장비 등의 관리·운영

ㅇ 기금관리 운용 지원: 750억원

- 공단 인건비 및 장애인기금 사업운영비

< '21년도 기금운용계획 >

(단위: 백만원)

구 분	'20계획(A)	'21계획(B)	증 감 (B-A)	%
계	75,729	78,391	2,662	3.5
○ 장애인고용정보화	3,413	3,358	△55	△1.6
○ 기금관리(운영비)	72,316	75,033	2,717	3.8

5. 임금채권보장기금

1) 수입 및 지출 총괄

□ 수 입

○ ’21년도 순수입은 **5,513억원**(’20년 보다 **5.5%** 증가)

- 여유자금 회수를 포함한 총 운용규모는 10,083억원

(단위: 백만원)

구 분	’20계획(A)	’21계획(B)	증 감 (B-A)	%
총 계	**885,292**	**1,008,284**	**122,992**	**13.9**
□ 순수입	522,798	551,308	28,510	5.5
○ 사업주부담금	359,437	381,864	22,427	6.2
○ 변제금·이자·공탁금 회수 등	163,279	169,362	6,083	3.7
○ 일반회계전입금	82	82	0	0.0
□ 여유자금 회수	362,494	456,976	94,482	26.1

□ 지 출

○ ’21년도 총지출은 **7,304억원**(’20년 보다 **50.0%** 증가)

- 여유자금 운용 규모는 2,779억원

(단위: 백만원)

구 분	’20계획(A)	’21계획(B)	증 감 (B-A)	%
총 계	**885,292**	**1,008,284**	**122,992**	**13.9**
□ 총지출	486,832	730,427	243,595	50.0
○ 체당금 지급	433,460	669,831	236,371	54.5
○ 무료법률구조지원	24,114	22,907	△1,206	△5.0
○ 체당금조력지원	150	135	△15	△10.0
○ 체불청산지원 융자	15,645	24,010	8,365	53.5
○ 임채기금 운영비	13,463	13,543	80	0.6
□ 여유자금 운용	398,460	277,857	△120,603	△30.3

2) 주요 사업별 계획

❖ 체불근로자의 체불 임금·휴업수당·퇴직금에 대한 **체당금 지급,** 도산기업 퇴직근로자의 **체당금 조력비용 지원**

❖ **체불 임금** 등의 지급을 위한 **체불청산 융자 지원,** 근로자 **무료법률 구조지원** 등을 통해 **체불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안정에 기여**

ㅇ 체불근로자 체당금 지급: 6,698억원

- (**일반체당금**) 상한액 인상 및 일반체당금 감소 추이 반영

  △ ('20년) 1,808억원(26,008명) → ('21년) 793억원(10,387명)

- (**소액체당금**) 소액체당금 증가 추이 및 제도개선* 소요 반영

  △ ('20년) 2,526억원(70,208명) → ('21년) 4,813억원(103,651명)

  * 지급대상 재직자 확대, 지급절차 간소화(7개월→2개월)

- (**코로나19**) 체불 증가에 선제적 대응 소요* 반영

  △ ('21년) 1,092억원(21,000명)

ㅇ 무료법률 구조사업 소요비용 출연: 229억원

- 체불근로자들이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절차를 통하여 임금채권을 행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 ('20년) 89,535건 → ('21년) 85,058건

  *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비 등 임금체불관련 소송(민사, 소액심판, 보존, 강제집행)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 일체

    ↳ 변호사 비용: 113,849원(건당), 소송비용: 155,483원(건당)

o 체당금 조력지원: 1.4억원

- 10명 미만의 영세 소규모 사업장에서 기업의 도산으로 임금 등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체당금을 신청하는 경우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20년) 137건 → ('21년) 126건 (▵11건)

* 지원액 : 도산등사실인정 90만원, 체당금 신청 근로자 1인당 6만원

o 체불청산 지원 융자: 240억원

- 임금체불 청산을 지원하는 융자 대상을 확대(근로자)하여 체불 근로자의 체불임금 청산을 지원(임금채권보장법 개정 추진)

△ ('20년) 총 5,370명(사업주 3,038명, 근로자 2,332명)
→ ('21년) 총 8,491명(사업주 4,488명, 근로자 4,003명)

* 융자금액: 사업주(총 7천만원, 근로자 1인당 6백만원), 근로자(1천만원)
↳ 이자율: 사업주(2.2~3.7%), 근로자(2.5%)

< '21년도 기금운용계획 >

(단위: 백만원)

구 분	'20계획(B)	'21계획(B)	증 감 (B-A)	%
계	473,369	716,884	243,515	51.4
○ 체당금 지급	433,460	669,831	236,371	54.5
○ 무료법률구조 지원	24,114	22,908	△1,206	△5.0
○ 체당금조력지원	150	135	△15	△10.0
○ 체불청산지원 융자	15,645	24,010	8,365	53.5

6. 근로복지진흥기금

1) 수입 및 지출 총괄

□ 수 입

○ ’21년도 순수입은 2,924억원(’20년 대비 23.0%)

- 여유자금 회수를 포함한 총 운용규모는 5,104억원

(단위: 백만원)

구 분	’20계획(A)	’21계획(B)	증감 (B-A)	%
합 계	355,183	510,362	155,179	43.7
□ 순수입	237,682	292,445	54,763	23.0
○ 융자금 회수	98,518	98,518	-	-
○ 재산수입	7,245	7,510	265	3.7
○ 경상이전수입 및 재화 및 용역 판매수입	16,429	71,857	55,428	337.4
○ 정부내부수입	115,490	114,560	△930	△0.8
□ 여유자금 회수	117,501	217,917	100,416	85.5

□ 지 출

○ ’21년도 총지출은 2,288억원 (’20년 대비 57.4%)

- 여유자금 운용규모는 2,209억원

(단위: 백만원)

구 분	’20계획(A)	’21계획(B)	증감 (B-A)	%
계	355,183	510,362	155,179	43.7
□ 총지출	145,339	228,818	83,479	57.4
○ 사업비	129,586	189,131	59,545	46.0
○ 기금운영비	15,751	39,687	23,936	152.0
○ 차입금 이자상환	2	-	△2	순감
□ 정부내부지출	58,163	60,623	2,460	4.2
○ 공자기금 예탁	50,000	50,000	-	-
○ 계정간 전출	8,163	10,623	2,460	30.1
○ 복권기금 반환	-	-	-	-
□ 여유자금운용 등	151,681	220,921	69,240	45.6
○ 차입금 원금상환	84	-	△84	순감
○ 여유자금 운용	151,597	220,921	69,324	45.7

2) 주요 사업별 계획

1 노동자 복지사업

❖ 임금체불 및 취약계층노동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으로 가계부담 경감과 생계안정 도모

❖ 30인 이하 사업장 대상 근로복지공단의 퇴직연금 공적서비스 제공으로 영세사업장 노동자 노후소득 보장 강화

❖ 중소기업의 기업복지제도 도입 지원, 근로복지기금지원 사업 등을 통한 기업규모 간 복지격차 완화

○ 생활안정자금(융자): 991억원

- 저소득노동자 및 임금체불노동자에게 자녀학자금, 혼례비, 장례비, 임금체불생계비 등 융자

  * ('20년) 38,000명 → ('21년) 15,652명

○ 근로자복지지원: 16억원

- 문화예술제(4억원): 4개 분야(미술·음악·연극·미술) 예술제 개최

- 기업복지활성화지원(12억원): 300인 미만 중소기업 대상 근로자지원 프로그램(EAP) 제공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제도 도입 상담 지원

  * 개인상담: ('20년) 10,674건 → ('21년) 10,674건

○ 퇴직연금 사업운영: 28억원

- 소규모사업장 취약 근로계층의 퇴직급여 체불방지 및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퇴직연금 공적서비스 제공

  * 계약형퇴직연금사업 운영(30인 이하)

○ 근로복지기금 지원: 172억원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중소협력업체 노동자 대상 복지사업을 시행하거나, 중소기업 포함한 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경우 재정지원

ㅇ 근로복지정보시스템(정보화): 33억원

- 근로복지포털사이트 운영을 통한 저소득 노동자의 정보격차 해소 및 수요자 중심 복지서비스 지원

< '21년도 기금운용계획 >

(단위: 백만원)

구 분	'20계획(A)	'21계획(B)	증 감 (B-A)	%
계	113,555	123,975	10,420	9.2
○ 생활안정자금(융자)	88,546	99,051	10,505	11.9
○ 근로자복지지원	1,691	1,646	△45	△2.7
○ 퇴직연금사업운영	2,794	2,754	△40	△1.4
○ 근로복지기금 지원	17,180	17,180	-	-
○ 근로복지정보시스템 (정보화)	3,344	3,344	-	-

2 신용보증 사업

❖ 보증·담보여력이 없는 노동자 등이 생활안정자금(융자) 등을 원활히 융통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 지원

ㅇ 신용보증대위변제: 192억원

- 고용노동부 실시 정책자금 융자 대상자 중 신용보증 신청하는 자에 대해 1인당 2,000만원 이내 신용보증지원

* 신용보증대상 융자사업: 근복기금(생활안정자금(융자)), 고보기금(직업훈련생계비대부), 산재기금(산재근로자생활안정자금)

< '21년도 기금운용계획 >

(단위: 백만원)

구 분	'20계획(A)	'21계획(B)	증 감 (B-A)	%
계	16,031	19,156	3,125	19.5
○ 신용보증대위변제	16,031	19,156	3,125	19.5